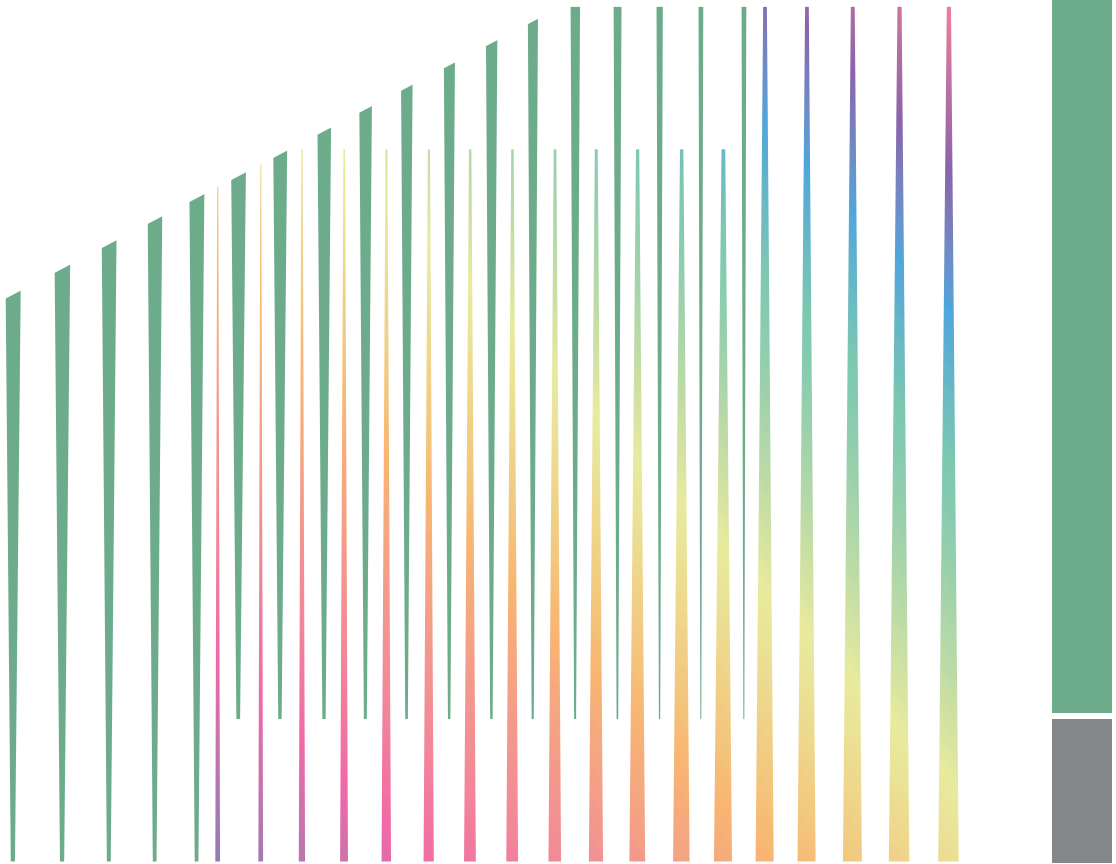


수시연구과제

2021-01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관한 연구

정다운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관한 연구

2021. 4.

정다운

서 언

본고는 간이과세제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관해 검토한다.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이 넘지 않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의 예외적인 제도이다.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율 10%에 업종별로 차등화된 부가가치율을 곱한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10%보다 작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세부담 수준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세부담 차이는 의도치 않게 사업자들의 경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 수준에 따라 사업자들의 경제적 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들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관찰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경제적 행동을 왜곡하지 않는 수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한 고민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다.

기존에 간이과세 및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본고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실제 부가가치세 미시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에서 사업자들의 일부 표본을 받아 분석하였다. 저자가 파악한 바로는 부가가치세 미시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해 검토한 선행연구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2021년부터 간이과세의 기준금액을 21년 만에 상향 조정하는 등 간이과세와 관련한 제도 개편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보다 더 많은 표본 수를 바탕으로 본고의 연구를 개선하는 연구를 통해 간이과세제도의 올바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근거 자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다운 부연구위원이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내의 세미나 및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원내 박사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특히 중간보고, 최종보고 단계에서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정재호 선임연구위원, 권성준 부연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본 연구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해 주신 원외 익명의 평가자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자료 협조 및 자료 이용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국세청 이진희 조사관, 김경록 조사관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가 책임을 지고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자의 독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2021년 4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요약 및 정책시사점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되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핵심적인 개편 사항은 기준금액의 인상이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변경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적 목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려와 함께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외생적인 충격이 결정적으로 정책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제의 정상적인 과세 제도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애초 도입 목적은 영세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납세 협력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납세 협력 비용이라 함은 장부의 기장 능력, 신고서의 작성 능력 등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전반적인 행정비용을 의미한다. 간이과세의 본래 목적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감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납세 협력 비용의 조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간이과세 제도는 현실적으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감소를 염두에 두고 운영되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율 10%에 업종별로 차등화된 부가가치율을 곱한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10%보다 작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세부담 수준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간이과세제도 운영의 핵심 중 하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다. 간이과세자의 납세액은 공급대가 외에 표준 부가가치세율(10%)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하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에 따른 납세 부담의 차이일 수 있다. 만약 간이과세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비용을 초과한다면 기준금액과 업종 조건만 부합한다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것이고, 비용이 이익을 초과한다면 일반과세를 선택할 것이다. 사업자들이 납세 유인 구조에 반응하는 것은 경제적 주체로서 최적 납세 행위를 선택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우려되는 점 한 가지는 과세 체계에

의한 경제적 행위의 조정(adjustment)이 산업별로, 사업체의 규모별로,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별로 이질적으로 관찰될 경우,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적 비효율성 차원에서 부수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세심한 설정을 통해 이러한 왜곡을 시정하여 더욱 효율적인 부가가치세제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기존 간이과세제도(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에 따른 사업체들의 행태 변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나누는 기준은 사업체의 매출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의 적용을 통한 기대이득이 크다면 간이과세자는 매출 조정을 통해 행태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태 변화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들의 행태 변화를 분석하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간이과세제도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조정을 통해 사업체들의 행태 변화를 바꿀 수 있는지, 또한 그러한 변화가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는 국세청 국세통계센터의 실제 부가가치세 개별 사업체의 신고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간이사업자들 및 일반사업자들의 행태 변화를 살펴보았다.¹⁾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이다.

1. 사업자들은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 자신의 매출을 조정하거나 매입을 조정하는 형태로 간이과세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2. 따라서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의 사업체들의 분포는 기타 구간과 다를 수 있다. 만약 사업체들의 분포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 주변에서 다른 구간과 비교하여 다른 형태의 분포가 관찰된다면, 이는 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기대한 결과 간이과세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3. 이러한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간이과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크기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세율의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1) 물론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도 분석에 완벽하게 적합하지는 않다. 자세한 설명은 본고의 사업체 행태 분석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이러한 가설을 검토함으로써 기존 간이과세제도하에서 관찰되는 특징들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지 고민한다.

분석 결과 4,800만원 근방에서 분포의 집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업자들이 기준금액 주변에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태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업종별로, 지역별, 사업체의 업력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사업체가 서울에 위치해 있거나, 업력이 오래된 사업체일수록 분포의 집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발견하였으며, 이 역시 세부담의 분절 현상과 연관되어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세무 정보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세무 정보의 접근성이 높은 사업체가 비교적 경제적 행위의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추측되며, 이러한 가능성이 사업체 분포의 집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개별 사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최적(optimal)의 의사결정일 수 있으나, 경제적 행동의 의도적 왜곡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는 최적화된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과세 당국이 간이과세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러한 왜곡을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연구 가설 3을 검토한 결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2020년 기준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할 경우, 4,800만원 근방에서 사업체 분포의 집군 현상은 많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조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경제적 유인을 조정할 경우, 사업체 분포 왜곡의 시정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시키는 세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인 사업자들의 미시 자료를 사용하여 간이과세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연구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간이과세 및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연구는 대부분 집계된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데 그쳤다면, 본고는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한 점이 큰 차이점이다. 또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근방에서의 사업자들 분포 행태를 저자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으로 검토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에 대한 증거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세입의 확

보를 통한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을 준 세제로, 다른 세목에 비해 안정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장점이 있다.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10% 단일세율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세율 변화에 따른 왜곡 가능성이 없는 효율적인 세금으로 평가 받는다. 또한 고령화·저출산을 비롯하여 향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재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근로소득 및 소득세 감소와 세계 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는 법인세 세입의 변동성은 향후 우리나라 세입 기반 불확실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는 앞선 두 세목에 비해 세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우리나라의 세입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세입 기반을 넓히고 부가가치세의 예외 사항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검토해야 할 것은 4,800만원 기준금액 주변에서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가 관찰되었듯이, 상향 조정된 8천만원 기준금액 주변에서도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가 관찰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비록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8천만원 금액 주변에서의 실제 사업자들 부가가치율 역시 상향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준에 따라 사업자들의 선택 조정에 대한 유인은 반드시 존재한다. 8천만원 금액 주변의 사업자들이 4,800만원 주변 사업자들에 비해 절대적인 숫자가 더 많다면, 8천만원 근방에서의 경제적 왜곡의 크기는 더욱 클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세율 조정을 통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빈번한 세율 조정 역시 경제적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과 적절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고민이 추후 연구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납세 행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단순 경비율 제도처럼 업종을 좀 더 세분화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설정할 경우, 보다 세밀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목 차

I. 서론	1
II. 간이과세제도의 개괄	5
III. 선행연구 검토	9
IV. 사업체들의 행태 분석 1	18
1.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 주변 분포	19
2.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 주변 분포의 그룹별 이질성	22
3. 소결	34
V. 사업체들의 행태 분석 2	36
1.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 비교 기초 통계	36
2.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 그래프 비교	38
3. 소결	55
VI. 업종별 부가가치율	56
1.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개괄	56
2.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을 통한 분포의 변화	62
3. 소결	73
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5
참고문헌	79
부록	81

표 목 차

〈표 II-1〉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 연간 공급대가 기준금액 및 세율	5
〈표 II-2〉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변화	7
〈표 II-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8
〈표 V-1〉 공급대가 구간별 간이사업자 및 일반사업자의 납부세액 비교 1	37
〈표 V-2〉 공급대가 구간별 간이사업자 및 일반사업자의 납부세액 비교 2	37
〈표 V-3〉 세무사 분포	49
〈표 V-4〉 세무법인 분포	50
〈표 V-5〉 세무조정건수 분포	50
〈표 V-6〉 지역별 사업자 및 세무법인 분포	51
〈표 VI-1〉 간이과세제도 업종별 부가가치율	56
〈표 VI-2〉 국세통계연보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평균 1	58
〈표 VI-3〉 국세통계연보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평균 2	58
〈표 VI-4〉 국세통계연보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연도별 평균	59

그림목차

[그림 IV-1]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분포(2019년, 2020년)	21
[그림 IV-2] 연도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분포	22
[그림 IV-3] 업태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분포 1	23
[그림 IV-4] 업태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분포 2	24
[그림 IV-5] 사업체 개업일별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분포	26
[그림 IV-6] 지역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분포 1	29
[그림 IV-7] 지역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분포 2	30
[그림 IV-8] 지역별, 업태별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분포 1	32
[그림 IV-9] 지역별, 업태별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분포 2	33
[그림 V-1]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	39
[그림 V-2]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 비교 1	40
[그림 V-3]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 비교 2	41
[그림 V-4] 업태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납부세액 비교 1	43
[그림 V-5] 업태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납부세액 비교 2	44
[그림 V-6] 개업일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납부세액 비교 (4,700만~4,900만원)	45
[그림 V-7] 개업일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납부세액 비교 (4천만~5,600만원)	46
[그림 V-8] 지역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납부세액 비교 1	47
[그림 V-9] 지역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납부세액 비교 2	48
[그림 V-10] 지역별 및 개업일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납부세액 비교 1 ...	53
[그림 V-11] 지역별 및 개업일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납부세액 비교 2 ...	54
[그림 VI-1]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비교	61
[그림 VI-2]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후 납부세액 비교 - 사업체 업종별	63
[그림 VI-3]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후 납부세액 비교 - 사업체 지역별	64
[그림 VI-4] 국세통계연보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시 분포 변화	68
[그림 VI-5] 국세통계연보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시 업종별 분포 변화	70

[그림 VI-6] 분석자료 업종별 부가가치율 중간값 적용 시 분포 변화	71
[그림 VI-7] 분석자료 업종별 부가가치율 중간값 적용 시 업종별 분포 변화	72

I. 서론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되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핵심적인 개편 사항은 기준금액의 인상이다. 2000년도 이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 변경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는 기준금액의 인상을 계속해서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2020년, 20년 만에 기준금액을 공급대가 8천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변경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적 목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려와 함께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외생적인 충격이 결정적으로 정책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차례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기준금액 인상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제의 정상적인 과세 제도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애초 도입 목적은 영세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납세 협력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납세 협력 비용이라 함은 장부의 기장 능력, 신고서의 작성 능력 등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전반적인 행정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는 비단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제의 예외 사항이기는 하나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간이과세의 본래 목적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감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납세 협력 비용의 조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는 현실적으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감소를 염두에 두고 운영되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율 10%에 업종별로 차등화된 부가가치율을 곱한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10%보다 작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세부담 수준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또한 정상적인 부가가치세제 범위에서 벗어난 이러한 예외적 허용은 궁극적으로 과세 기반의 잠식, 부가가치세제의 기본 질서 교란 등 잠재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간이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무가 없고, 이는 사실 부가가치세의 가장 중요한 장점인 매 거래 단계의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정상적인 시스템으로부터 예외 적용을 받게 되어, 간이사업자가 포함된 거래는 과세 당국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2021년부터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은 인상하되, 부가가치세제의 기본 질서 교란을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새롭게 적용하였다. 또한 기준금액 인상에 따라 간이과세로 인한 지나친 세제 혜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하였으며,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공제 혜택도 일정 부분 축소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부가가치세제 정상화를 위한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이라는 명분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간이과세제도 운영의 핵심 중 하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다. 간이과세자의 납세액은 공급대가 외에 표준 부가가치세율(10%)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하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에 따른 납세 부담의 차이일 수 있다. 만약 간이과세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비용을 초과한다면 기준금액과 업종 조건만 부합한다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것이고, 비용이 이익을 초과한다면 일반과세를 선택할 것이다. 사업자들이 납세 유인 구조에 반응하는 것은 경제적 주체로서 최적 납세 행위를 선택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우려되는 점 한 가지는 과세 체계에 의한 경제적 행위의 조정(adjustment)이 산업별로, 사업체의 규모별로,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별로 이질적으로 관찰될 경우,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적 비효율성 차원에서 부수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세심한 설정을 통해 이러한 왜곡을 시정하여 더욱 효율적인 부가가치세

제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기존 간이과세제도(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에 따른 사업체들의 행태 변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나누는 기준은 사업체의 매출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의 적용을 통한 기대 이득이 크다면 간이과세자는 매출 조정을 통해 행태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태 변화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저자가 파악한 바로는 이전에 간이과세자의 행태 변화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전무하며, 해외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다. 연구가 제한적인 가장 큰 이유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들의 행태 변화를 분석하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간이과세제도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조정을 통해 사업체들의 행태 변화를 바꿀 수 있는지, 또한 그러한 변화가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는 국세청 국세통계센터의 실제 부가가치세 개별 사업체의 신고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간이사업자들 및 일반사업자들의 행태 변화를 살펴보았다.¹⁾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이다.

1. 사업자들은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 자신의 매출을 조정하거나 매입을 조정하는 형태로 간이과세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2. 따라서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의 사업체들의 분포는 기타 구간과 다를 수 있다. 만약 사업체들의 분포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 주변에서 다른 구간과 비교하여 다른 형태의 분포가 관찰된다면, 이는 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기대한 결과 간이과세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3. 이러한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간이과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크기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세

1) 물론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도 분석에 완벽하게 적합하지는 않다. 자세한 설명은 본고의 사업체 행태 분석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율의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토함으로써 기존 간이과세제도하에서 관찰되는 특징들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지 고민한다. 특히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중요성에 대해 검토하며, 간이과세제도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제의 효율적 운영(경제적 효율성 및 행정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 포함)을 위해 고민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려 한다. 본고는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해 고민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간이과세제도의 본래 정책적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부가가치세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점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II. 간이과세제도의 개괄

우리나라 간이과세제도의 역사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1977년부터 시작된다. 현재와 같은 간이과세제도가 부가가치세 도입 초기부터 운영된 것은 아니고, 과세특례제도 형태로 운영되었다. 과세특례제도는 현행 간이과세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은 현행 간이과세제도와 유사하게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최종 거래 대상자가 소비자인 업종이었으며, 세율은 일반 부가가치세율(1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다.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업종 대다수에는 2%의 세율을 부과하였으며, 대리·중개·도급·위탁매매의 경우 이보다 높은 3.5%를 적용하였다. 과세특례제도의 적용 기준은 현행 간이과세제도와 마찬가지로 공급대가이다. 기준금액은 일반소매업 등 기준으로 1977년 제2기부터 1978년 제2기까지는 연간 공급대가 기준 1,200만원이었으며, 1988년 제2기부터 1996년 제1기까지는 연간 공급대가 3,600만원이었다.

〈표 II-1〉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 연간 공급대가 기준금액 및 세율

연도	일반소매업 등 (세율: 2%)	대리, 중개, 도급, 위탁매매 (세율: 3.5%)	납부의무 면제금액(납부세액 기준, 과세기간(1기) 기준)
1977	1,200만원	300만원	7,500원
1978			1만원
1979~1987	2,400만원	600만원	1만원
1988	3,600만원	900만원	1만원
1989			2만원
1990~1993			4만원
1994			6만원
1995			12만원
1996~1999	4,800만원	1,200만원	24만원
2000			1,200만원(공급대가 기준)
2000~2018	4,800만원		2,400만원
2019~2020	4,800만원		3,000만원
2021년 이후	8,000만원		4,800만원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12), p. 8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과세특례제도는 1999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서 폐지되고, 2000년부터 현재와 같은 형태의 간이과세제도가 출범하였다. 2000년 이후에 연간 공급대가 2,400만 원을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으로 정하였으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4,800만원으로 정하여 유지하였다. 2019년에는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이 연간 공급대가 3천만원까지 증가하였으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4,800만원은 2020년까지는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납부의무면제 금액 역시 상향 조정되어 4,8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2000년도 이후 간이과세의 기준금액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간이과세제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표 II-2〉 참조). 간이과세제도 운영 초기에는 20%로 업종별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업종별로 15~40%의 부가가치율을 설정하였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15%,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 20%,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20%, 농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경우에는 30%, 운수 및 통신업은 4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였다. 2013년 이후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5~30%로 낮춰서 조정하였다.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은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였다.

2021년 간이과세제도 개편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변화도 포함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0년 이후 간이과세제도는 기준금액의 변화 없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세부담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납세 행태도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조정된 것은 연도별로 업태의 부가가치율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경에 따른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후 이러한 점을 반영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설정은 간이과세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2〉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변화

(단위: %)

구분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¹⁾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00년 제2기	20	20	20
2001년	20	22,50	25
2002년	20	25	30
2003년	20	27,50	35
2004~2005년	20	30	40

구분	소매업	제조업·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농업·임업 및 어업·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음식점업·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06~2012년	15	20	30	40

구분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숙박업·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
2013~2020년	5	10	20	30

구분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업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숙박업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기타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2021년	15	20	25	30	40

주: 1)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2003년 제1기부터 기타 서비스업에서 분리되어 20%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기 시작함

2) 소매업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2011.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15%

3) 음식점업, 숙박업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2014.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

자료: 삼일인포마인, 「부가가치세 세율 및 업종별 부가가치율」, <http://www.samill.com/tax/BugaRate.asp>, 2021. 1. 18., 검색일자: 2021. 1. 18.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납세 절차 및 납세액 산정 절차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표 II-3〉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주요 차이점을 설명한다. 간이과세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그 외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를 자의로 선택할 수 있다. 간이과세 대신 일반과세를 선택할 경우 시장에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납세 협력 비용의 증가 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간이과세의 경우 일반과세와 달리 납부세액을 산정할 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세액을 정한다. 따라서 납부세액의 규모 자체가 감소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 할 수 있다.

〈표 II-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납부세액	매출세액 - 공제대상 매입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¹⁾
납부의무면제	규정 없음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주: 1)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납부세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공제에 의해 결정된다.

자료: 나성길 외(2019), p. 55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에서 50%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 부가가치액이란 생산과정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를 의미하며, 보통 매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소요된 매입액을 제한 부분을 부가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최명근·나성길(2007)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 계산에서 지대와 임차료를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관적으로, 그리고 자료의 제약 등으로 매출액과 매입액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액을 계산하여 활용하기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Ⅲ. 선행연구 검토

제Ⅲ장에서는 간이과세제도 및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다.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집계된 자료, 즉 국세청 혹은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검토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를 토대로 간이과세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박명호·성명재, 2012).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유사한 주제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저자가 파악하기에 거의 없다.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기초 통계를 조사하는 데 그치거나, 세법 및 회계학적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해외 선행연구 중 부가가치세를 연구한 경제학 연구 역시 적은 편이며,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별도로 분석한 연구는 더욱 적다. 또한 본고에서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하는 사업체들의 행태 분석과 관련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대부분 자료의 접근성 제약이라는 한계 때문에 분석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최근 Kou et al.(2020)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Kou et al.(2020)은 본 연구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금액에 반응하는 행태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본고에서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지는 않으나, 간이과세의 적용에 따른 사업체들의 행태 변화를 연구하였다는 측면에서 본고의 접근 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세입 중 매우 중요한 세목 가운데 하나이다. 부가가치세는 중국의 전체 세수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일반 과세와 간이과세(small-scale taxpayers)로 나누어 과세한다. 일반과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인 17%가 과세되며,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13%의 경감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2009년 이후 간이과세자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세율인 3%를 적용받으며, 일반과세자에게 제공되는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나누는 기준은 연매출액이며,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은 상이하다. 예를 들어 2009년 이전에는

제조업의 경우 100만원안화(2021년 4월 환율 기준 약 1억 7,094만원), 소매업의 경우 180만원안화(2021년 4월 환율 기준 약 3억 769만원)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나누는 기준이었다. 2009년 이후에는 이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으며, 제조업의 경우 50만원안화(2021년 4월 환율 기준 약 8,546만원), 소매업의 경우 약 80만원안화(2021년 4월 환율 기준 약 1억 3,672만원)로 조정되었다. Kou et al.(2020)은 이러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소매업 부문에서 기준점 부근에 사업체들이 많이 몰리는 집군(bunching) 현상을 발견하였다. 즉 사업체들이 간이과세 적용을 통한 세제 혜택 유인에 반응한 결과, 간이과세 기준점 부근에서 사업체들이 몰리는 현상을 발견한 것이다. 이 연구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간이과세자의 행태를 분석한 거의 유일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Kou et al.(2020)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변화 효과 등은 다루지 않았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연구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심충진·김진태(2020)의 연구인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타당성을 분석한 연구는 그나마 본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충진·김진태(2020)는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성실납세 및 응능부담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020년 이전의 기존 간이과세제도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성실납세 및 응능부담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는지가 불명확하며 간이과세자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계산에 대한 근거도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정보공시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 업종 간 부가가치율의 적용률이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영세상인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실제 창출한 부가가치율보다는 낮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특례제도를 통해 받고 있는 조세혜택의 크기 또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심충진·김진태(2020)는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및 검증을 하고 조세부담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업종 간 조세혜택 규모의 공평성을 측정하였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차이가 없다면 업종별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다를 수 있지만 부가가치율은 유사하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간

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들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비교하였다. 심충진·김진태(2020)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들의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지는 못하였다. 앞서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이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간이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역시 일반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을 가정하고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대용치(proxy)는 정상적인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해석하였다. 이 대용치와 2020년 이전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비교한 결과, 대용치 값이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농·임·어업이며, 대용치 값이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50% 이상 낮게 나타난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 도매업, 음식업, 운수·창고·통신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이전 간이과세제도하에서 조세혜택 규모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한다면, 음식업, 운수·창고·통신업은 그 혜택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제조업, 대리·중개·도급업은 조세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심충진·김진태(2020)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조정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분석의 가장 큰 전제가 되는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일반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동일성 가정에 대한 한계점이다. 실제 본고에서 부가가치세 미시 신고자료를 통해 추정된 결과, 이러한 가정은 상당히 강한 가정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을 통한 간이과세제도의 개편을 검토한 중요한 연구이지만, 자료 등의 제약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은 존재한다.

이하에서 검토할 연구들은 본고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구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유석(2019)은 향후 저출산·고령화·노령층의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 증가와 그로 인한 재정 소요를 예측하고 있다. 덧붙여 이러한 재정 소요로 인해 증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을 예상하며 이를 위해 세목별 세부담 수준에 대한 논의와 조세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³⁾ 또한 우리나라와

3) 정유석, 「주요 세목별 조세지원제도의 운영과 합리적인 세제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86호,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와 소득세 및 소비세의 과세자 비율과 세부담의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 등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소득 및 소비세제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기본적으로 OECD의 연간 통계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를 토대로 조세부담 수준을 검토하였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최저 5%에서 최고 30%까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국세통계에 기초한 7개년의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수도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대부분 법정 부가가치율을 훨씬 상회하는 실질 부가율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한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는데,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율보다 훨씬 낮은 법정 부가가치율이 적용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아져 과세형평에 위배됨을 지적한다.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이과세제도의 당초 취지가 세부담 완화를 포함하고 있지만, 과도한 세부담의 경감을 통한 세제 지원은 일반과세자의 과세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소비세 부담수준이 31위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낮은 부담수준을 보이며, 또한 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이 19.3%인 점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특히 과도하게 광범위한 면세대상 범위의 축소 조정과 간이과세자 범위의 축소 조정 및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의 현실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정유석(2019)은 심충진·김진태(2020)와 마찬가지로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활용하여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판단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역시 부가가치세 미시 신고자료의 부재에 따른 한계로 해석할 수 있다.

강남례·김원배(2018)는 “근거과세를 통한 조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⁴⁾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간이과세제도의 문제

한국국제회계학회, 2019, pp. 75-96.

4) 강남례·김원배,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연구」, 『기술경영』, 제3권 제4호,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2018, p. 25.

점과 개선방안 검토를 위해 저자들은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의한 응답은 총 387개 자료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 납세자 등 세 집단 모두 간이과세제도는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음을 보였다. 특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의 부가가치세 세부담 차이에 대한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의 인식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매출을 축소하는 위장 간이과세자의 존재,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기피로 인한 상호검증 약화를 이용한 일반과세자의 탈세 가능성⁵⁾을 우려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연 4,800만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⁶⁾하고 있었다. 즉 낮은 수준의 기준금액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의 우려가 더 적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만약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개선방안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또는 더욱 세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세무공무원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례·김원배(2018)는 결론적으로 간이과세 대상자의 수 및 납부의무면제자의 수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조세 중립성의 목적을 달성하고, 탈세 및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적은 표본을 활용한 해석의 어려움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서정우(2015)는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간이과세제도 관련 문제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부가가치세의 정착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2013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전체 납세인원 중 약 32% 정도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그 규모가 무시할

5) 강남례·김원배(2018) p. 40.

6) 강남례·김원배(2018) p. 40.

수 없을 정도로 큰 점을 지적한다. 또한 대부분(82.7%)의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 면제로 분류되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는 전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의 25%에 이르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이 전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꼽는다. 첫째는 간이과세자의 높은 비율과 이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납부세액 비율이다. 둘째는 간이과세 한계사업자의 간이과세 영역에 안주하고 있는 현상이다.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결과, 간이과세자의 2/3 정도인 약 40만명 정도의 간이과세 한계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매출액을 과거보다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서 면제됨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적용이 불합리한 점이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4단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5%, 10%, 20%, 30%)은 실질적인 부가가치율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더욱 세분화된 부가가치율의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서정우(2015)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단기적 개선방안과 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4단계 업종별 부가가치율(5%, 10%, 20%, 30%)은 실질적인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더 정확한 납부세액의 산출을 위해 일본과 같이 5단계 혹은 10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소비세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를 제안한다.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라는 주장이다.

서정우(2015)는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간이과세 한계사업자들이 간이과세 적용 영역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1999년과 2000년을 비교하였다. 1999년과 2000년의 간이과세 기준금액 변경에 따른 인원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약 40만명 정도가 여전히 간이과세에 머물며 매출을 축소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편의가 매우 클 가능성이 높다. 미시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1999년의 기준금액 변경은 일부 업종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추정치 자체가 과대 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단순 구성 (composition)의 변화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을 미시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서동국·허원(2013)은 2013년 현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간이과세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⁷⁾해 내고자 하였다. 미래에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현행 조세 제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안정적 세수 확보일 것이며, 향후 전체 국세 세수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간이과세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제의 특례제도인 간이과세는 예외대상자의 세제 혜택,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왜곡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하경제 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중요한 문제점 중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과세표준 양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과 조세부담의 불공평 문제이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인해 세금계산서의 질서가 훼손되어 과세표준을 누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간이과세제도가 세원 투명성 확보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자체의 역할과 더불어 과세표준이 소득세나 법인세 산출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을 통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여러 세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장 간이과세자와 같은 문제는 근로소득자와 자영 사업자 간의 과세 형평성 침해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간이과세제도는 적용받는 세율이 낮고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인원이 많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서동국·허원(2013)은 간이과세제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관련하여서는 비합리적인 적용이라고 지적한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의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10~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법정 부가가치율은 『국세통계연보』에 따른 최근 5년간 일반사업자의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율 분석결과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전체 업종을 겨우 3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현실보다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 경감효과를 유

7) 서동국·허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3, p. 2.

발하고 업종 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문제 삼고 있다.⁸⁾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보다 세분화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성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서동국·허원(2013)은 기본적으로 본고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개선 방향에 대해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 근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간이과세제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선행연구는 김승래·박명호·홍범교(2007)이다. 김승래·박명호·홍범교(2007)는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와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간이과세제도와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타당성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부가가치세제 납부 면제점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한 결과, 현행 면제점 수준은 적정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면제점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후생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⁹⁾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업종별 부가가치율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또는 매 3년마다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세분화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세부담 감소를 통해 간이과세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금액이나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동결하여 가급적 간이과세자를 줄이려는 정책방향과 상반된 것이므로, 간이과세자 관련 정책방향은 일관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¹⁰⁾하다고 주장한다.

김승래·박명호·홍범교(2007)는 전반적으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재설정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는 본고의 주장

8) 서동국·허원(2013), pp. 31~32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9) 김승래·박명호·홍범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p. 176.

10) 김승래·박명호·홍범교(2007), p. 177.

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고와의 유사점, 차별점 등을 살펴보았다. 본고와 비교하였을 때, 기본적인 문제 의식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공통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과 본고의 중요한 차이점은 이미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부가가치세 미시 신고자료를 토대로 사업체의 행태를 분석하여 간이과세제도의 잠재적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관찰된 행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다. 또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향후 간이과세제도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은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별점이다. 제IV장에서는 사업체들의 행태 분석을 시작으로, 앞서 언급한 연구 가설 세 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V. 사업체들의 행태 분석 1

제IV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공급대가 4,800만원) 주변 구간에서 사업체들의 행태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체들의 과표기준 4천만원에서 5,600만원 사이의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2018년 귀속)과 2020년(2019년 귀속) 표본을 업종별로 무작위 추출한¹¹⁾ 자료를 사용하였다. 4,800만원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표본 추출을 목적으로 4천만원에서 5,600만원 사업자를 선별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표본 수는 1만 3,892개 업체이며, 이 중 간이사업자는 5,791개, 일반사업자는 8,101개 업체가 표본에 포함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는 총 1만 4,788개 업체이며, 이 중 간이사업자는 6,404개, 일반사업자는 8,384개 업체이다.¹²⁾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 주변에서의 사업체들의 행태 분석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과세 구조에 대한 사업체들의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사업체들의 행태 변화를 예측해 보고, 이를 토대로 과세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여 검토한다.

1. 사업체들은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 자신의 매출을 조정하거나 매출을 조정하는 형태로 간이과세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의 사업체들의 분포는 기타 구간과 다를 수 있다.
2. 만약 실제로 사업체들의 분포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 주변에서 다른 구간과 비교하여 다른 형태의 분포가 관찰된다면, 이는 사업체들이

11) 앞으로 편의상 2018년 귀속은 2018년으로, 2019년 귀속은 2019년으로 표기한다.

12) 분석은 저자가 국세청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하여 추출된 표본으로 직접 분석, 검토하였다. 참고로 2019년 기준 4천만원에서 5,600만원 구간의 사업자는 대략적으로 약 45만개 사업체이며, 2020년은 약 46만개 사업체이다. 정확히 이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국세통계연보』는 4천만원에서 5,600만원 구간의 사업자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이과세를 선택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기대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3. 이러한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간이과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크기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면 사업자들 분포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장에서 사업체들의 행태 분석을 통해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연구 가설을 검토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과거 간이과세제도에서 혹시나 발견될 수 있는 납세 행위의 의도적 왜곡 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우려되는 경제적 비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고민하려 한다. 특히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하여 향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

1.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 주변 분포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매출 규모를 토대로 선별된다. 하지만 업종별로 그리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이 있다. 이는 신고자료 상에서 별도로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다. 즉 신고자료를 토대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업종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제도를 분석할 때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추정 과정에서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이사업자로 분류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는 6개 업태로 한정하였다. 그 대상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운송·창고·통신업, 대리·중개·도급업, 그리고 전문직을 제외한 서비스업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세청 국세통계센터의 자료 이용 과정에서 애초부터 6개 업태만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하였다.

나머지 업태들을 본고에서 분석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이 위임받아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대해 고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 및 상권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70(광명로)의 경우 2019년까지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었으나, 상권이동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2020년부터 간이과세 적용 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세부적인 배제 업종에 대해 고려하기가 어려워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태(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태들 가운데 6개 업태 위주로 살펴본다. 물론 이러한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도, 정확하게 간이과세 적용·배제를 분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사업장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분석에 고려하지 못했다.

우선 공급대가 4,800만원 구간 주변에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분포를 살펴본다. [그림 IV-1]은 2018년과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사업자 중에서는 공급대가가 4,800만원보다 적은 사업자가 있을 수 있으며, 간이사업자 중에서는 4,800만원보다 많을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본 분석에서는 편의상 신규사업자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그림 IV-2]는 2018년과 2019년을 각각 별개로 동일한 분포의 그림을 그려 표시하였다.

[그림 IV-1]의 (a)는 공급대가를 30만원 단위로 묶어서 빈도 수를 계산한 후의 분포이며, (b)의 경우에는 10만원 단위로 분류한 분포이고, [그림 IV-2]의 경우도 비슷한 방법으로 연도별로 그렸다.¹³⁾ 그림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급대가 4,800만원을 기준으로 분포에 있어서 집군 현상이 관찰된다는 점이다.¹⁴⁾ 특히 [그림 IV-1]의 (a)를 살펴보면, 집군 현상이 4,800만원 주변에서 매우 뚜렷하게 관찰된다. 기타 구간과 비교하여 매우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의 경우에는 5,4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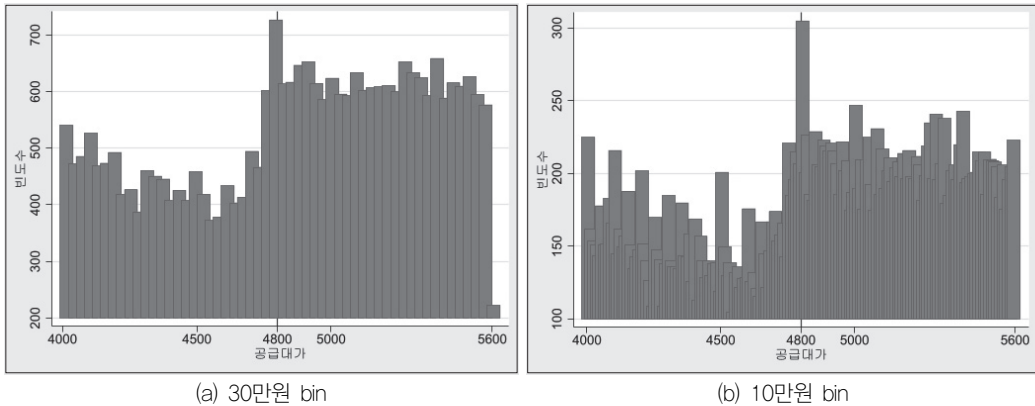
13) 10만원, 30만원 등의 구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업체들끼리 비교하기 위해 구간의 설정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표본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5만~50만원까지의 구간을 사용한 결과는 결과 자체에 큰 차이는 없다.

14) 본고에서는 집군 추정 탄력치를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고,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래프 분석으로 진행한다. 집군 추정 탄력치는 추후 연구 작업으로 남겨 둔다. 연구 해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구간에서도 분포가 유독 커지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는 2019년 자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분포의 집군 현상은 4,800만원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800만원을 기준으로 분포가 유독 달라지는 현상에 대한 한 가지 잠재적인 설명은 사업자들의 인위적인 자기선택(self-selection) 행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개입이 없었다면 사업자들의 분포에서 4,800만원에서 만 뚜렷한 집군 현상이 관찰될 이유가 없다. [그림 IV-1]과 [그림 IV-2]의 분포 그림은 연구 가설 1번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준다. 실제 신고자료상 간이과세 기준 금액 주변에서 분포의 특이성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그림 IV-1]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분포(2019년, 2020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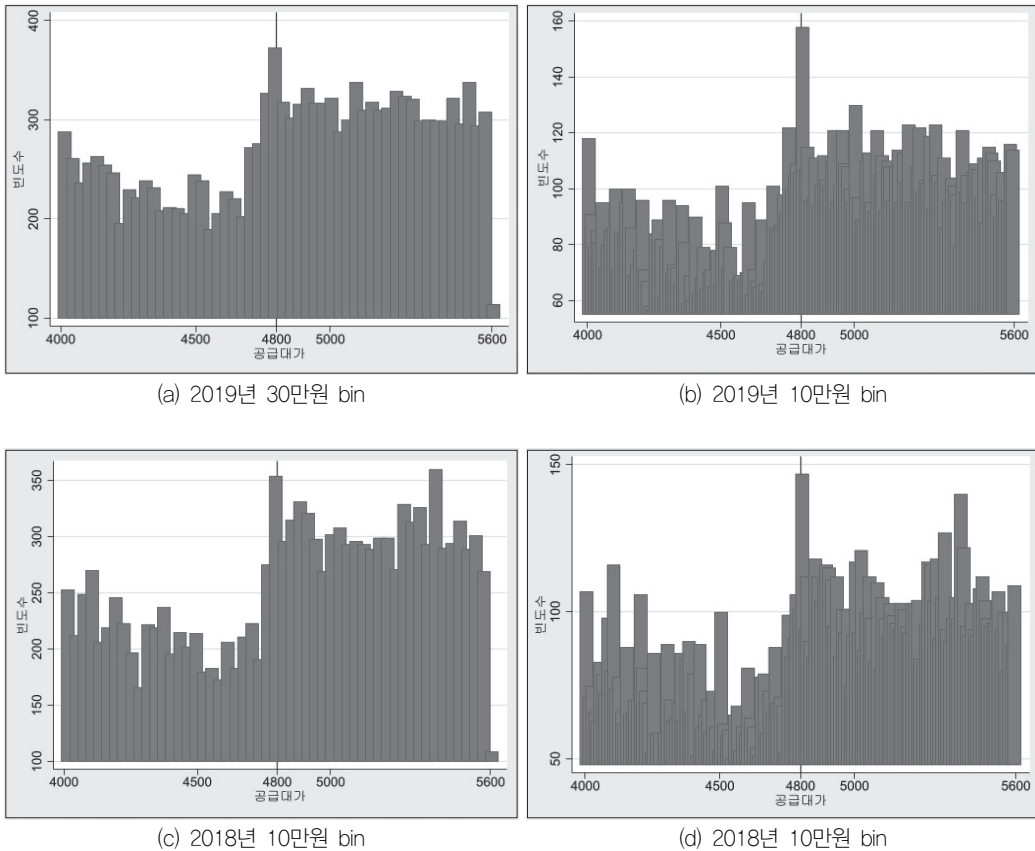
제2절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그룹별 특성에 따른 이질적 분포와 함께 이질적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 있는 기제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간이과세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2.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 주변 분포의 그룹별 이질성

1) 업태별 분류에 따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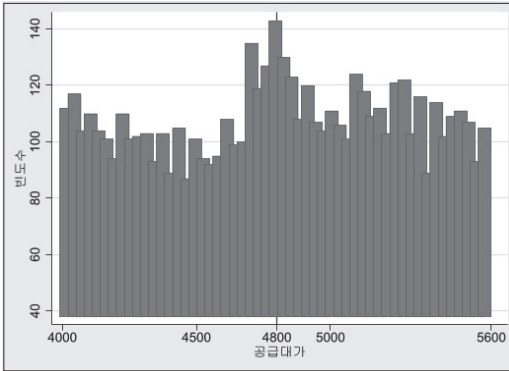
연구 가설 1번에 대한 해답은 [그림 IV-1]과 [그림 IV-2]를 통해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업태별로 [그림 IV-1] 및 [그림 IV-2]와 같은 현상이 관찰되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분석의 목적은 다음 연구 가설 2번과 3번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그림 IV-2] 연도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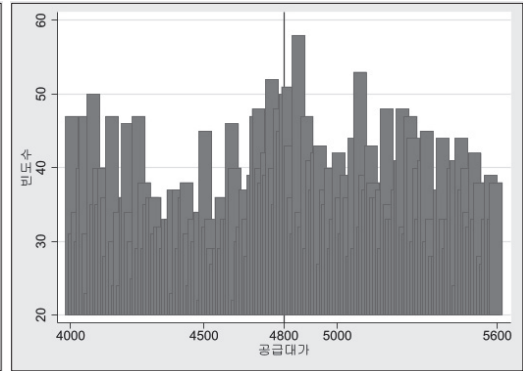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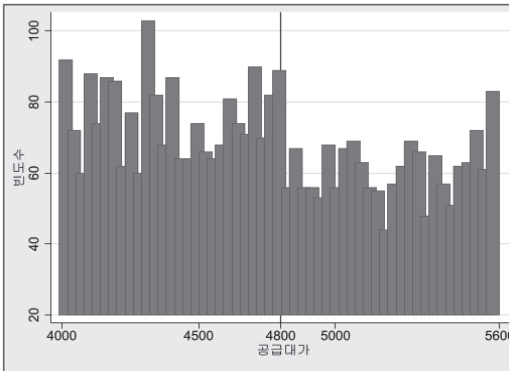
[그림 IV-3] 업태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분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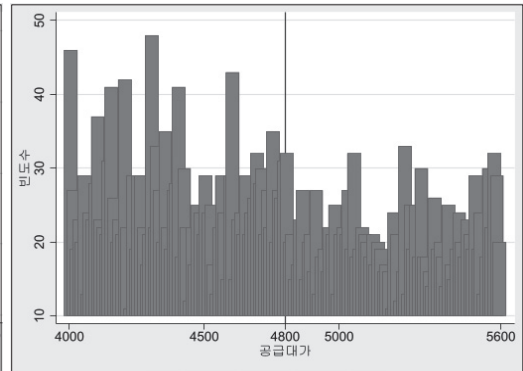
(a) 소매업 30만원 b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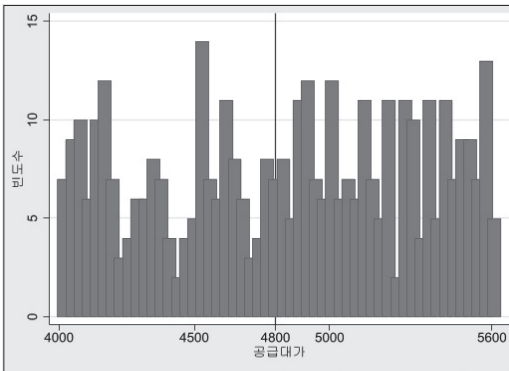
(b) 소매업 10만원 b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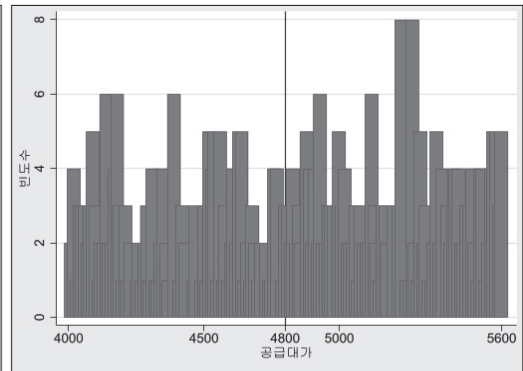
(c) 음식업 30만원 bin



(d) 음식업 10만원 b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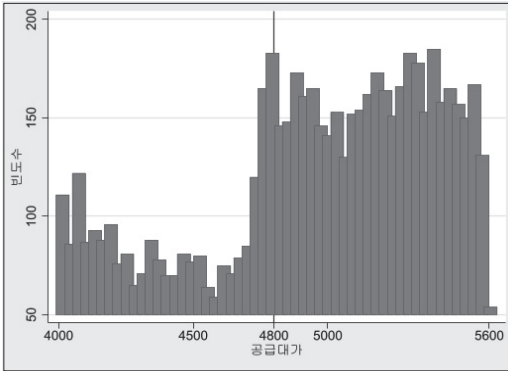
(e) 숙박업 30만원 b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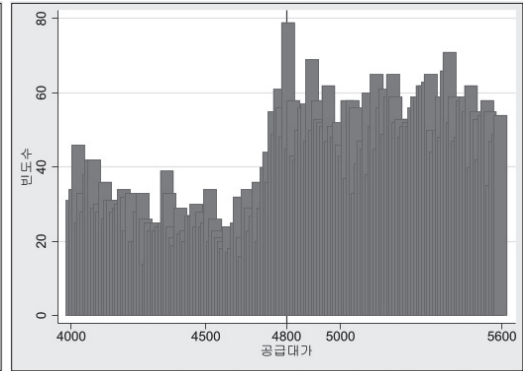
(f) 숙박업 10만원 bin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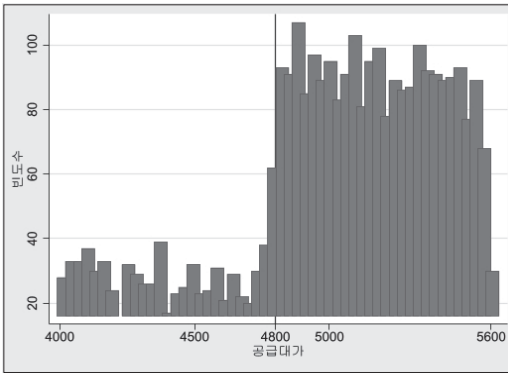
[그림 IV-4] 업태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분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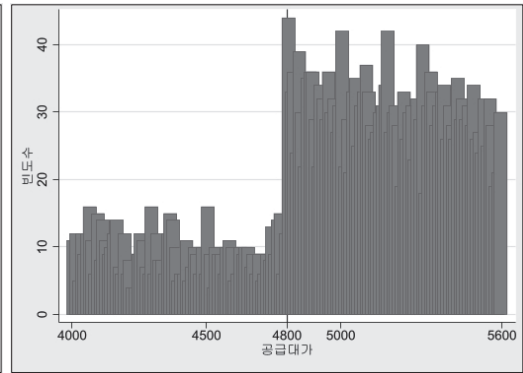
(a) 운수·창고·통신업 30만원 b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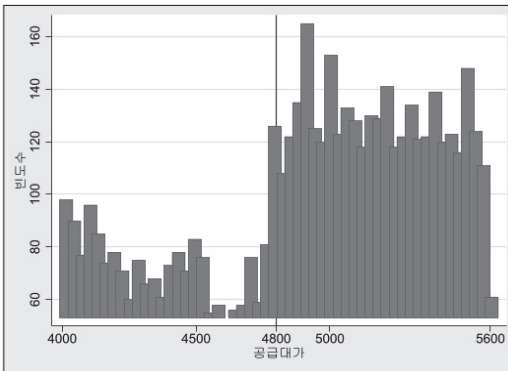
(b) 운수·창고·통신업 10만원 b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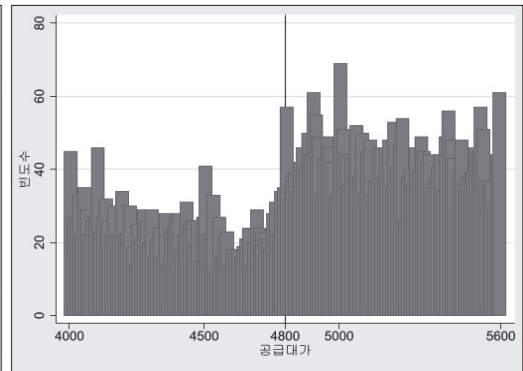
(c) 대리·중개·도급업 30만원 bin



(d) 대리·중개·도급업 10만원 bin



(e) 서비스업 30만원 bin



(f) 서비스업 10만원 bin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3]과 [그림 IV-4]는 [그림 IV-1]과 [그림 IV-2]와 같은 분석을 업태별로 진행하였으며, 공급대가 30만원 단위와 10만원 단위로 2018년 및 2019년 결합자료 분석 결과만 제시한다.¹⁵⁾ [그림 IV-3]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의 경우를 차례로 보여준다. [그림 IV-1]과 [그림 IV-2]에서 관찰되었던 뚜렷한 집군 현상은 [그림 IV-3]에서는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숙박업의 경우 공급대가 4,800만원 구간 주변에서 30만원 구간을 사용하든 10만원 구간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4,800만원 구간 주변의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는다. 즉 4,800만원 주변의 집군 혹은 변화 패턴이 다른 금액 구간에서 발견되는 현상과 특별하게 다른 점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매업의 경우 30만원 구간을 사용할 경우 분포의 집군 패턴이 관찰되지만, 매우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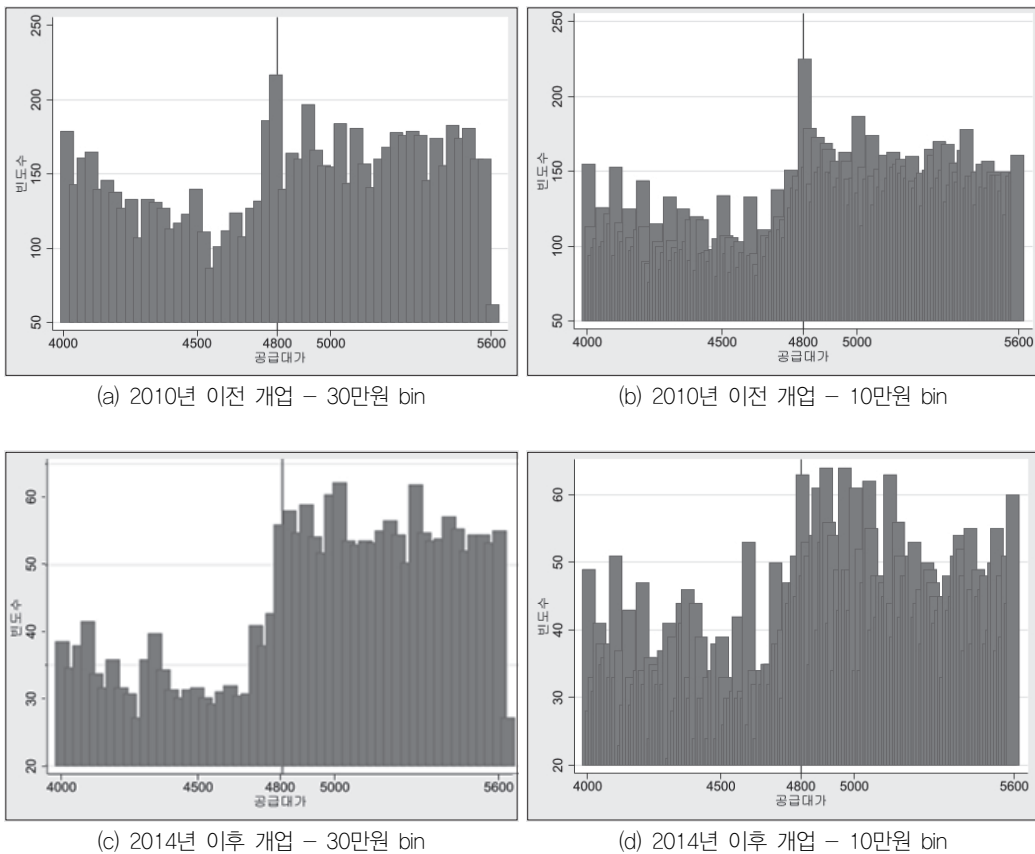
반면에 [그림 IV-4]의 분포 패턴은 [그림 IV-1] 및 [그림 IV-2]와 유사한 부분이 확인된다. [그림 IV-4]는 운송·창고·통신업, 대리·중개·도급업, 그리고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운송·창고·통신업은 대표적으로 택시업, 개인여객업, 화물운송 등이 포함되며, 대리·중개·도급업의 경우 부동산중개, 해외구매대행 등이 포함되고, 서비스업은 미용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운송·창고·통신업과 서비스업에서 분포의 집군 패턴이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된다. 결론적으로 [그림 IV-1] 및 [그림 IV-2]에서 발견되는 특성은 대부분 운송·창고·통신업, 대리·중개·도급업, 그리고 서비스업의 패턴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4,800만원 구간 이외의 구간에서도 집군 현상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다른 구간에서도 집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다른 구간에서는 간이과세제도와 같은 제도적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간이과세제도에 따른 유인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업태별로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연구 가설 1번은 적절한 가설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업태별로 분포의 패턴이 이질적으로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그림은 2018년과 2019년 결합 자료로 분석한 결과이며, 연도별로 각각 분석하여도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2) 사업체의 운영 기간 분류에 따른 분포

다음으로 [그림 IV-1] 및 [그림 IV-2]와 같은 패턴이 사업체의 개업일, 즉 사업 운영 기간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지 검토해 본다. [그림 IV-5]는 개업일에 따른 일반 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IV-5] (a)와 (b)는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림 IV-5] (c)와 (d)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¹⁶⁾

[그림 IV-5] 사업체 개업일별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분포



자료: 저자 작성

16) 분석 기간을 2010년과 2014년으로 나눈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기간을 다르게 조정하더라도 분석 결과는 유사하다. 또한 2018년 귀속 자료의 경우 신규 사업자를 제외하기 위해 2017년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로 한정하다 보니,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14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IV-5] (a)와 (b)의 패턴은 [그림 IV-1] 및 [그림 IV-2]의 패턴과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4,800만원 주변에서 분포의 특이한 현상이 전반적으로 관찰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림 IV-5] (c)와 (d)의 패턴은 [그림 IV-5] (a)와 (b)에 비해서 [그림 IV-1] 및 [그림 IV-2]와의 유사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집군 현상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본고에서 제시하지는 않지만 개업일 분류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하였을 경우, 개업일이 오래될수록 집군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소절에서 확인한 사업체 운영기간별 분포의 이질적 현상 역시 연구 가설 1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사업체들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따른 행태 변화가 신고자료 연도별로 이질적으로 관찰되며, 이러한 현상은 업태별은 물론 사업체의 운영 기간별로도 다르게 나타난다.

3) 사업체의 지역 분류에 따른 분포

다음으로 앞선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별로 일반 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분포가 공급대가 4,800만원 주변에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다. [그림 IV-6]과 [그림 IV-7]은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별 분포를 보여준다. 편의상 30만원 구간으로 그린 분포만 제시하였다. [그림 IV-6]은 사업체가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지역에 위치한 경우를 보여주며, [그림 IV-7]은 사업체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강원도에 위치한 경우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IV-6]과 [그림 IV-7]에서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은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별로 4,800만원 주변에서 분포 패턴이 이질적으로 관찰된다는 점이다.

참고로 사업체가 서울에 있는 경우는 분석 대상 중 약 22%였으며,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경우는 약 27%, 그리고 인천에 위치해 있는 경우는 약 5%였다. 또한 전라도에 위치한 사업체는 약 5.6%이며, 경상도에 위치한 사업체는 약 10%, 그리고 충청도에 위치한 사업체는 약 6%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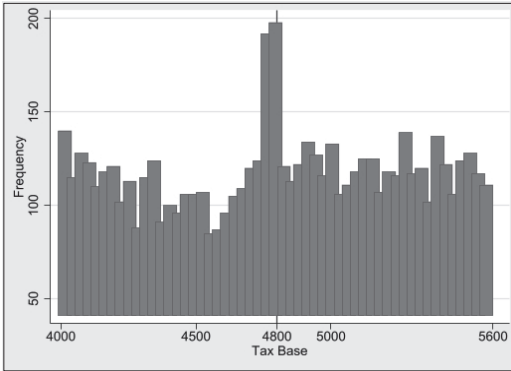
[그림 IV-6]을 먼저 살펴본다. 서울에 위치한 사업체의 경우는 4,800만원 구간 주변에서 매우 뚜렷한 분포의 집군 현상이 관찰된다. 서울의 분포를 기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더욱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4,800만원 주변

에서 분포의 특이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4,800만원 주변과 4,800만원 이상 구간에서의 분포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서울과 같이 4,800만원 구간에서만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기 어렵다. 인천의 경우에는 4,800만원 구간에서 집군 현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를 기준금액에 대한 사업체들의 행태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과표 5,300만원 주변에서도 비슷한 분포 형태가 관찰이 되고, 분포의 형태가 다른 구간에 비해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경우에도 4,800만원 주변의 특이한 분포를 찾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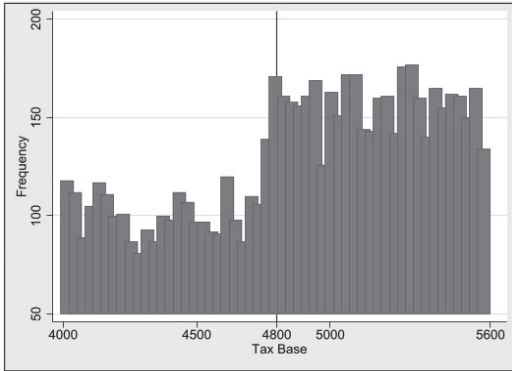
[그림 IV-7]은 기타 다른 광역시도에 위치한 사업체의 분포를 그린 것이다. 부산의 경우에는 서울과 같이 매우 뚜렷한 분포의 집군 현상을 찾기는 어렵지만, 4,800만원 주변에서의 분포가 다른 구간에서의 분포와 조금 다른 현상을 찾을 수 있다. 반면 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강원도에서는 특이한 분포 형태가 관찰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사업체의 분포는 연구 가설 1에 대해 [그림 IV-1], [그림 IV-2]와 동일한 해답을 제공한다. 부산 역시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서울만큼 뚜렷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질문은 유독 서울 및 부산에 위치한 지역에서만 분포의 특이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표본 추출 과정에서 지역별 고려를 하긴 했지만, 만약 전수자료를 사용할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서울과 다른 형태의 분포가 관찰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서울 및 부산에서의 특이한 분포 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연구 가설 2와 3에 대한 대답을 통해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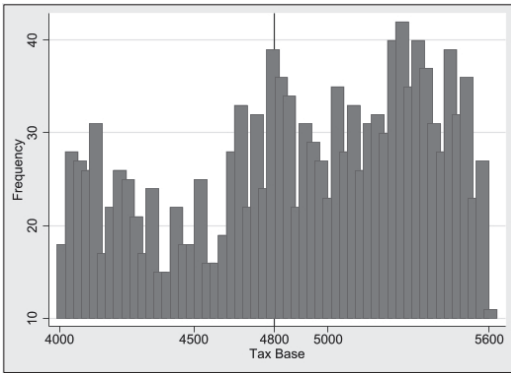
[그림 IV-6] 지역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분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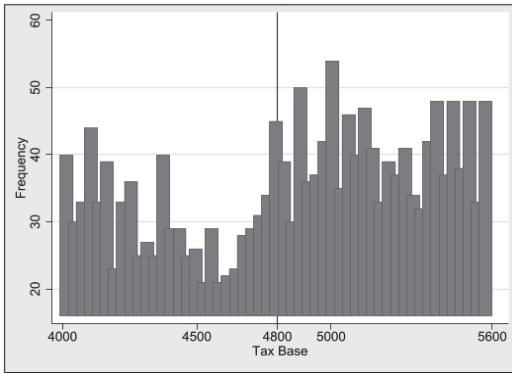
(a) 서울 - 30만원 b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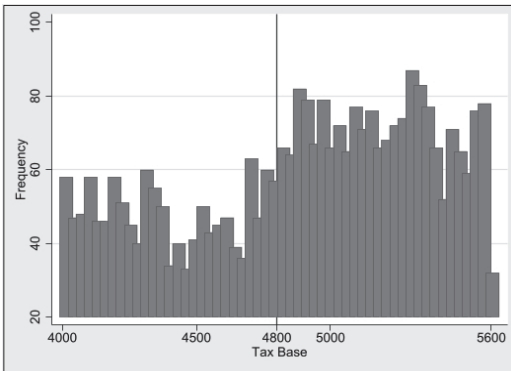
(b) 경기도 - 30만원 b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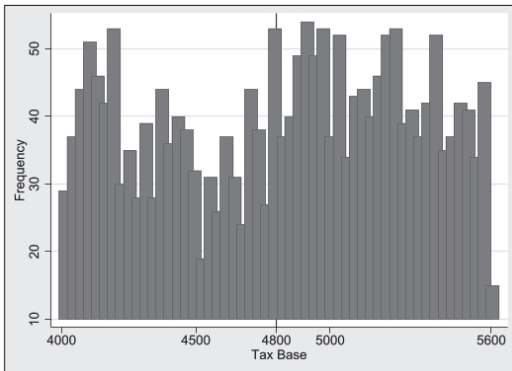
(c) 인천 - 30만원 bin



(d) 전라도 - 30만원 b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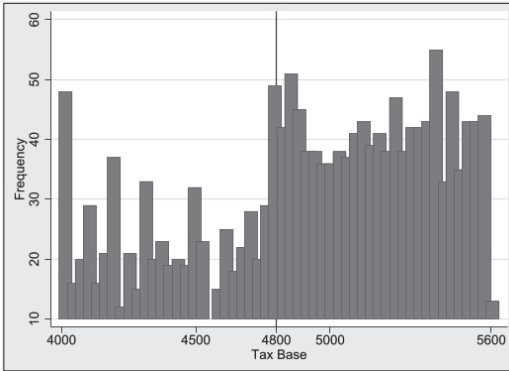
(e) 경상도 - 30만원 b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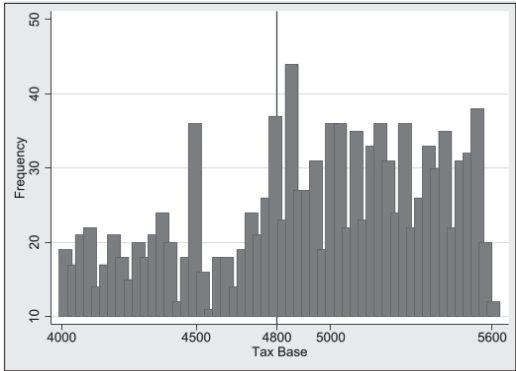
(f) 충청도 - 30만원 bin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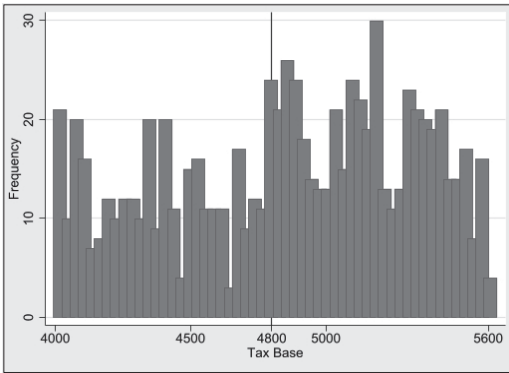
[그림 IV-7] 지역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분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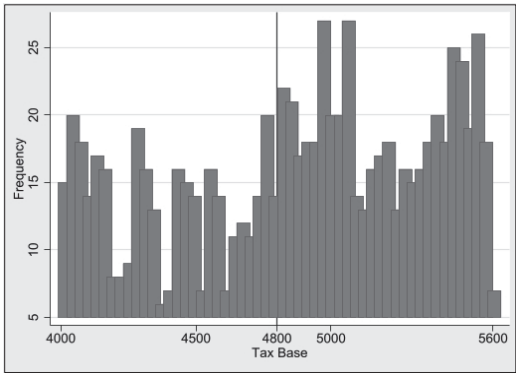
(a) 부산 - 30만원 b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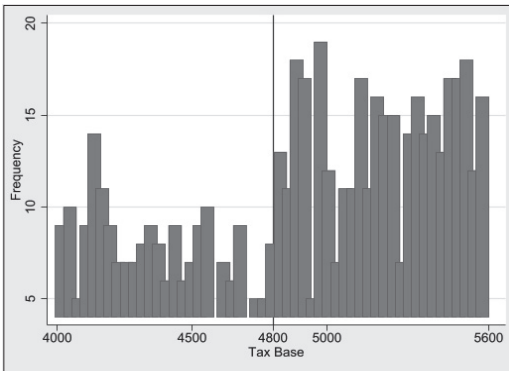
(b) 대구 - 30만원 b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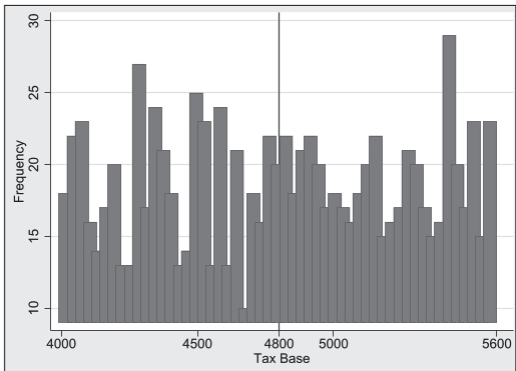
(c) 광주 - 30만원 bin



(d) 대전 - 30만원 bin



(e) 울산 - 30만원 bin



(f) 강원도 - 30만원 bin

자료: 저자 작성

4) 사업체의 지역 및 개업일 분류에 따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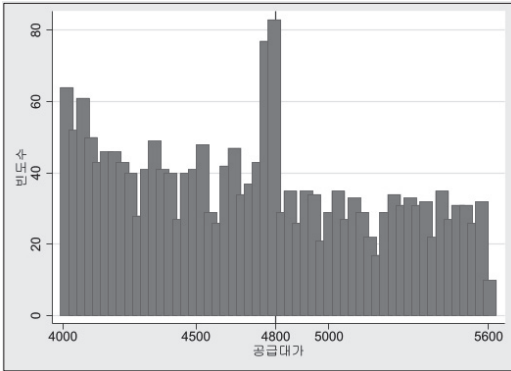
연구 가설 1을 검토하기 위한 마지막 분석으로서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과 개업일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를 살펴본다. [그림 IV-8]은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사업체를 개업일 기준으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눠 분포를 그린 것이며, [그림 IV-9]는 나머지 지역들을 개업일 기준으로 나누어 분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목적은 같은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사업체의 업력별로 분포의 이질적 패턴이 관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분포의 패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림 IV-8]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업체가 서울에 위치한 경우, 사업체의 개업일에 따라 분포의 패턴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림 IV-8] (a)는 사업체가 서울에 위치해 있고 개업일이 상대적으로 오래 전인 2010년 1월 이전 개업인 경우, 4,800만원 구간 주변에서 분포의 집군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반면에 사업체가 서울에 분포해 있더라도 개업일이 상대적으로 늦을수록, 즉 비교적 최근에 개업한 사업체들의 경우 4,800만원 구간 주변에서 분포의 집군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같은 서울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라도 사업체의 업력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림 IV-8] (c)~(f)의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개업일에 따라 분포의 다른 양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패턴은 기타 지역에서도 동일하다. [그림 IV-9]의 기타 지역들의 경우, 사업체들의 개업일에 따른 분포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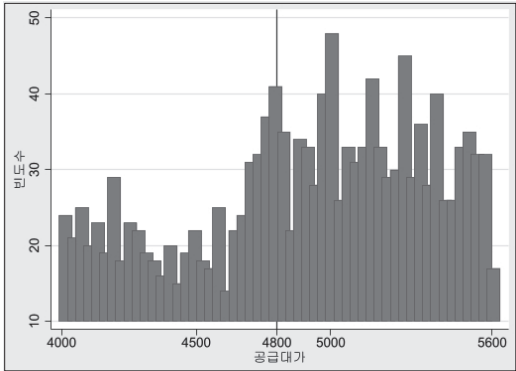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앞서 분석한 [그림 IV-5]의 분포 패턴을 설명하는 것은 서울 지역의 2010년 1월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들의 분포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 위치한 사업체의 숫자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들의 숫자보다 절대적으로 크다는 점도 이러한 분포 패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¹⁷⁾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이질적 분포를 검토한 결과, 연구 가설 1번에 대한 추가적인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소절에서 분석한 분포의 패턴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2018년, 2019년 개별로 분석하여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된다.

17) 지역별 사업체 수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국세통계센터로부터 반출이 허가되지 않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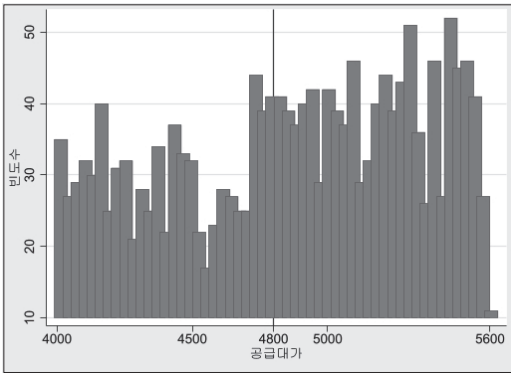
[그림 IV-8] 지역별, 업태별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분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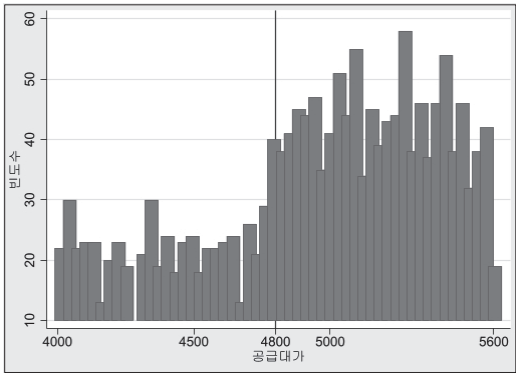
(a) 서울 2010년 1월 이전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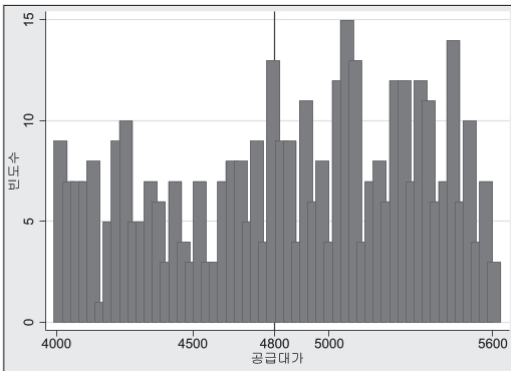
(b) 서울 2014년 1월 이후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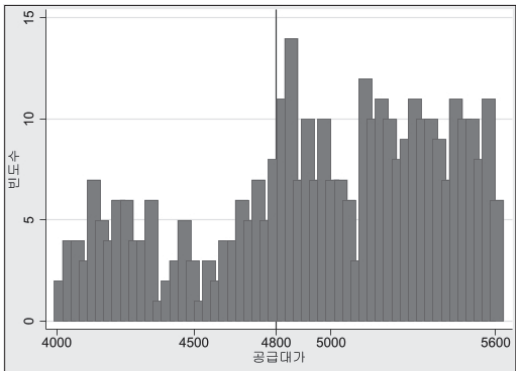
(c) 경기도 2010년 1월 이전 개업



(d) 경기도 2014년 1월 이후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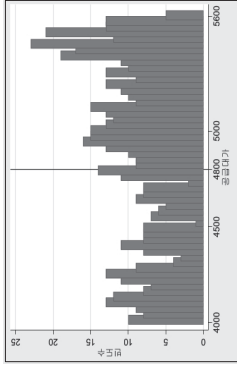
(e) 인천 2010년 1월 이전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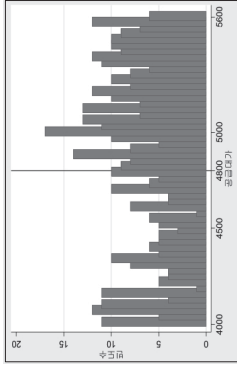
(f) 인천 2014년 1월 이후 개업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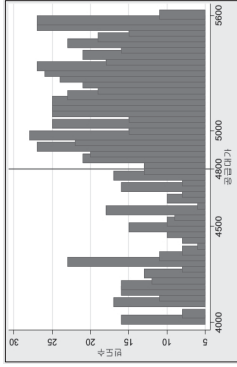
[그림 IV-9] 지역별, 업태별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분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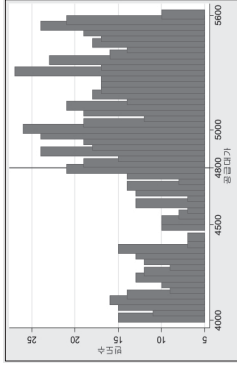
(a) 전라북도 2010년 1월 이전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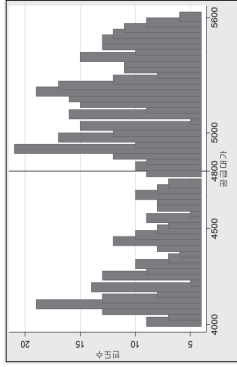
(b) 전라북도 2014년 1월 이후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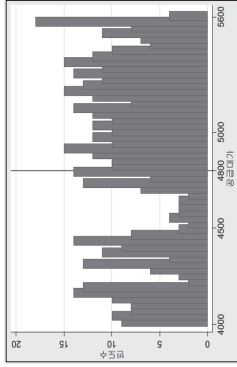
(c) 경상남도 2010년 1월 이전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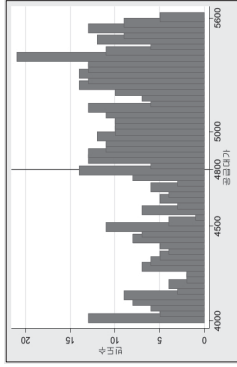
(d) 경상남도 2014년 1월 이후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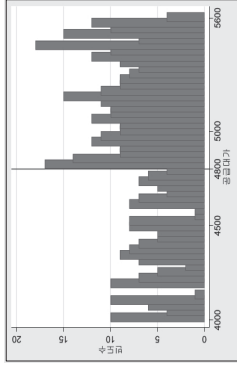
(e) 충청남도 2010년 1월 이전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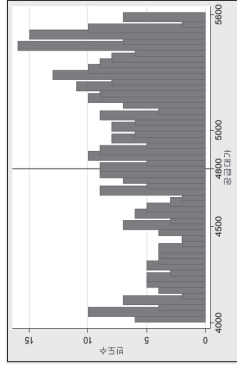
(f) 충청남도 2014년 1월 이후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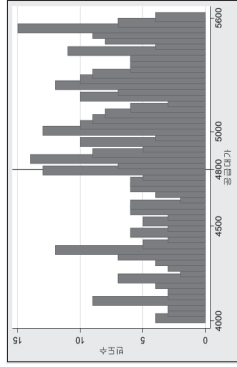
(g) 부산 2010년 1월 이전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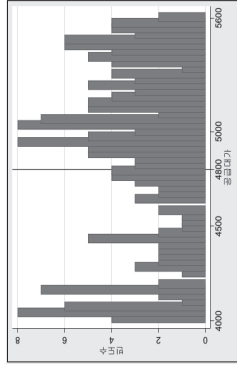
(h) 부산 2014년 1월 이후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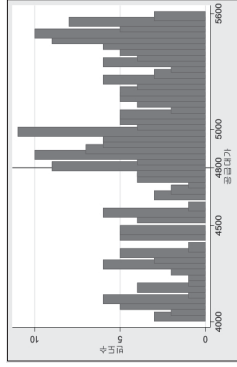
(i) 대구 2010년 1월 이전 개업



(j) 대구 2014년 1월 이후 개업



(k) 대전 2010년 1월 이전 개업



(l) 대전 2014년 1월 이후 개업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업체는 4,800만원 주변에서 집군 현상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서울에 위치하고 업력이 오래될수록 집군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가능한 기제에 대해서는 소결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3. 소결

제IV장에서는 연구 가설 1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적인 분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 주변 분포의 특이성을 찾을 수가 있었으며, 분포는 그룹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태별로 분포가 달랐으며, 사업체의 소재 지역별로나 사업체의 개업일을 기준으로도 다르게 분포된다. 요약하자면 전반적으로 4,800만원 구간 주변에서 분포의 집군 현상이 관찰된다. 업태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경우에, 소매업, 운송·창고·통신업, 대리·중개·도급업,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4,800만원 주변에서 분포의 집군 현상이 관찰된다. 물론 집군의 정도는 추가 추정치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분포의 그림상으로 매우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추후 연구로 남겨 둔다. 다만 업태 분석은 한 가지 한계점이 있다. 사업체의 업태 분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업태 분류에 있어 측정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이는 분석에 있어 편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는 자료상으로는 정확히 구분해낼 수 없다.

사업체가 위치한 소재지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에 위치한 사업체의 경우 매우 뚜렷한 집군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부산의 경우도 미세하게 집군 현상이 관찰된다. 또한 사업체의 개업일별로 분류하였을 경우, 사업체의 운영 기간이 오래된 업체일수록 4,800만원 주변에서의 집군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와 같은 이질적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잠재적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울 지역은 세무 정보의 교환이 기타 지역보다 더 빠르며, 절세 등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더 높다. 만약 서울에 위치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정보의 접근성 우위를 활용하여 공급대가를 4,800만원 이하로 줄여서 간이과세를 선택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의도적으로 사업체의 매출 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4,800만원 주변 구간에서의 집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사업체가 오래될수록 4,800만원 주변 구간에서 사업자의 매출 조정에 대한 경험적 지식(knowhow)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정보의 접근성이 높으면 사업체의 업력에 따라 4,800만원 주변 구간에서의 행태 변화가 관찰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본고에서 이에 대한 원인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는 못하지만, 추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제 V장에서는 4,800만원 주변에서의 납세 규모의 차이 검토를 통해 사업체 분포의 집군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보의 접근성이 이러한 관찰에 근거가 되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V장에서는 차례로 연구 가설 2와 3을 검토한다.

V. 사업체들의 행태 분석 2

1.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 비교 기초 통계

제 V장에서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4,800만원 주변 분포에 대한 설명을 위해 실제 납부세액과 관련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4,800만원 주변에서의 집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잠재적 가능성 중에서 사업자들이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매출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이다.

〈표 V-1〉은 2018년,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의 표본 대상인 공급대가 4천만원에서 5,600만원 사이의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업태별 납부세액을 요약한 것이다. 〈표 V-1〉의 (A)열은 공급대가 4천만원에서 4,800만원 사이 간이사업자의 업태별 납부세액 평균을 계산한 것이고, (B)열은 4,800만원에서 5,600만원 사이 일반사업자의 업태별 납부세액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 마지막 열에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비교하기 위해 두 그룹 간 납부세액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소매업의 경우 일반사업자는 간이사업자에 비해 약 40만원 더 납부하였으며, 음식업은 30만원, 운수·창고·통신업은 120만원 더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6개 업태 가운데 숙박업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서는 일반사업자의 납부세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을 조금 더 좁혀서 공급대가 4,700만원에서 4,900만원 사이에 분포한 사업체들을 비교한 결과는 〈표 V-2〉에 제시하였다. 4,800만원의 근방에 위치한 사업체들의 경우 대부분의 특성이 비슷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급대가 4,790만원 간이사업자와 공급대가 4,810만원 일반사업자는 사업 규모는 물론 기타 다른 특성에 있어서도 유사할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 앞선 〈표 V-1〉과 동일한 분석을 하였을 때, 〈표 V-2〉의 결과는 〈표 V-1〉의 결과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2018년과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각각 별도로 통계를 계산한 결과도 〈표 V-1〉 및 〈표 V-2〉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간단한 통계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상하였듯이,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세액의 크기가 간이과세자가 부담하는 납부세액의 크기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과 <표 V-2>는 납부세액의 크기를 비교하여 세부담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비교 구간을 좁혀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 크기의 차이가 여전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비슷한 규모의 사업체라 할지라도 간이사업자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예상되는 혜택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표 V-1> 공급대가 구간별 간이사업자 및 일반사업자의 납부세액 비교 1

(단위: 만원)

구 분	4,000~5,600만원		
	간이 (A)(4,000~4,800)	일반 (B)(4,800~5,600)	차이(B-A)
소매업	2.03	42.52	40.49***
음식업	0.25	30.63	30.38***
숙박업	18.71	-268.8	-287.5
운수·창고·통신업	10.55	130.8	120.2***
대리·중개·도급업	47.78	152.6	104.8***
서비스업	29.43	102.1	72.64***
전체	10.45	87.22	76.77***

주: 1.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저자 작성

<표 V-2> 공급대가 구간별 간이사업자 및 일반사업자의 납부세액 비교 2

(단위: 만원)

구 분	4,700~4,900만원		
	간이 (A)(4,700~4,800)	일반 (B)(4,800~4,900)	차이(B-A)
소매업	2.22	39.29	37.06***
음식업	0.36	27.48	27.12***
숙박업	20.47	76.45	55.98
운수·창고·통신업	12.26	118.7	106.4***
대리·중개·도급업	54.62	121.9	67.31**
서비스업	30.37	81.31	50.94**
전체	10.84	78.54	67.70***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저자 작성

18) 참고로 숙박업의 경우 일반사업자의 납부세액은 음수(-)로 계산되는데, 이는 해당 구간에서의 매입금액이 커서 매입세액공제의 크기가 매출세액보다 커짐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앞서도 설명하였지만 전수 자료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본고는 자료의 부재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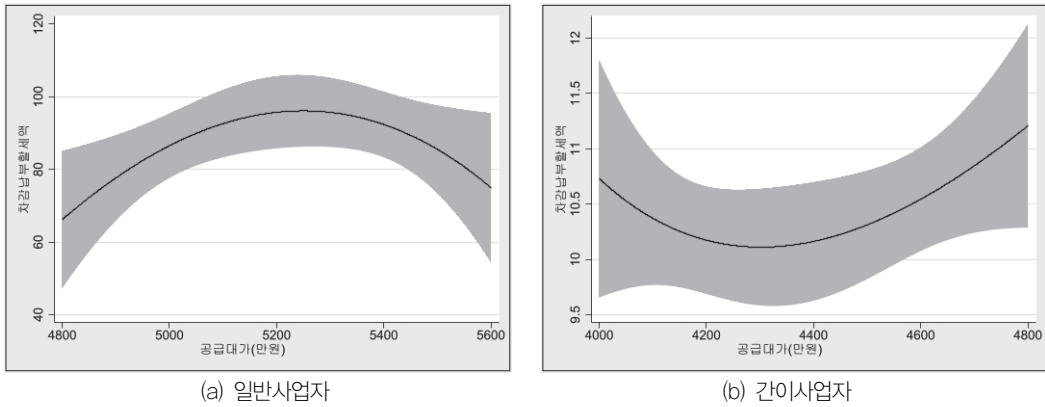
〈표 V-1〉과 〈표 V-2〉를 통해 연구 가설 2를 검토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4,800만원 주변 구간에서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부담하는 세부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음 소절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세부담의 차이가 제IV장에서 검토한 분포의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4,800만원 구간을 선택하는 현상의 배경에 세제 혜택이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 그래프 비교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간이과세제도는 실질적으로 세제상의 혜택, 즉 조세지원의 성격을 갖는다. 만약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간 세부담의 차이가 경제적 행동의 왜곡을 유발한다면, 이는 세제 운영의 비효율성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본 소절에서 검토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앞선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와 동일하다.

먼저 [그림 V-1]은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공급대가와 차감납부세액의 관계를 보여준다. 납부세액의 경우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은 물론, 경감 및 공제세액도 차감한 최종적인 납부세액을 의미한다. [그림 V-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납부세액이 대체로 증가하는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5,2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 과표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납부세액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제 규모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포선 주변의 회색 띠는 99%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본 수가 적어, 99% 신뢰구간을 나타내는 회색 영역이 간이사업자의 경우에 비해 좀 더 넓게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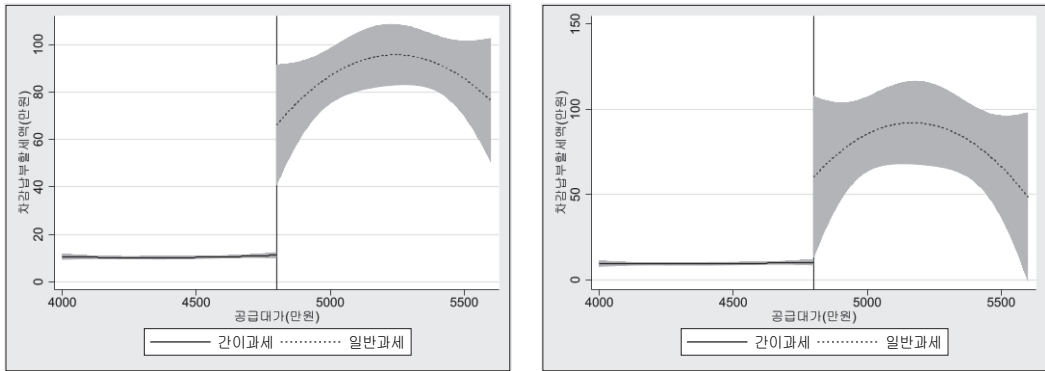
[그림 V-1]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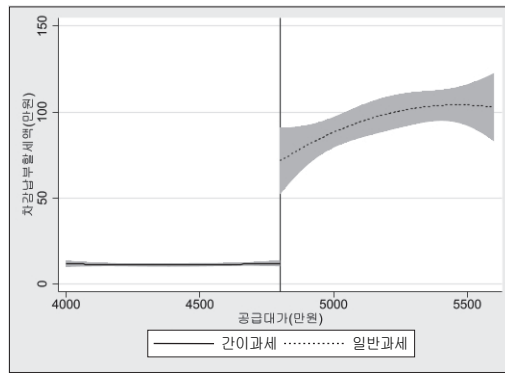
다음으로 4,8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것과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림 V-2]와 [그림 V-3]의 분석을 시도한다.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부가가치세율에 곱하여 적용하므로, 납부세액의 크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각 공급대가 구간에 대해 평균적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그려본 결과가 [그림 V-2]와 [그림 V-3]이다. [그림 V-2] (a)는 분석 대상 자료인 공급대가 4천만원에서 5,600만원 사이의 사업자를 모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2018년과 2019년의 표본을 모두 포함한 그림이며, [그림 V-2] (b)는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만 이용하여 4천만원에서 5,600만원 사이의 사업자 납부세액을 비교한 그림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V-2] (c)의 경우,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만 이용하여 4천만원에서 5,600만원 사이의 사업자 납부세액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V-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납부세액은 4,80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의 분포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99%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4,800만원 주변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림 V-2]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 비교 1



(a) 2018년, 2019년

(b) 2018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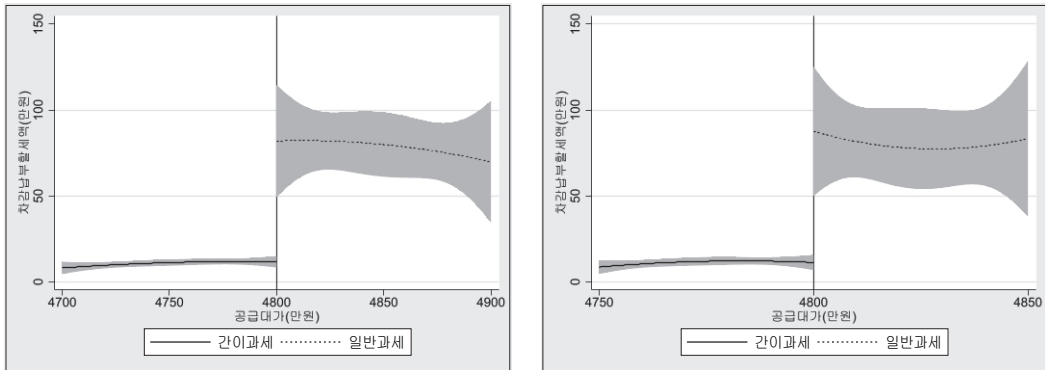
(c) 2019년 자료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3]은 [그림 V-2]와 동일한 검토를 하였으며, 분석 표본의 공급대가 구간에 따라 분석한다. 즉 [그림 V-3] (a)는 공급대가 4,700만원에서 4,900만원 사이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렸으며, (b)는 공급대가 4,750만원에서 4,850만원 사이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렸다. (c)는 4,500만원에서 5,100만원 사이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 표본 범위를 좁혀서 분석한 이유는 4,800만원 근방의 기업들의 특성이 더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고, 4,800만원 주변에서 관찰되는 납부세액의 불연속성이 제IV장에서 검토한 분포의 집군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급대가가 비슷한 기업일수록 여타 다른 관찰 가능한 변수 및 관찰 불가능한 변수에서의 차이가 적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림 V-3]은 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그린 [그림 V-2]와 마찬가지로 4,800만원 주변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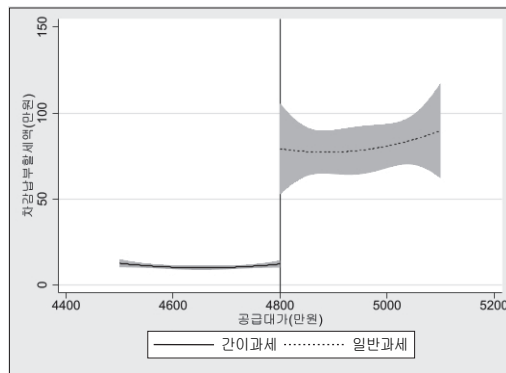
세자의 납부세액이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분석 표본의 수가 적어지면서 신뢰구간의 범위가 넓어지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는 것은 동일하며, 앞선 기초 통계로 살펴본 <표 V-1>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3]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 비교 2



(a) 4,700~4,900만원 표본

(b) 4,750~4,850만원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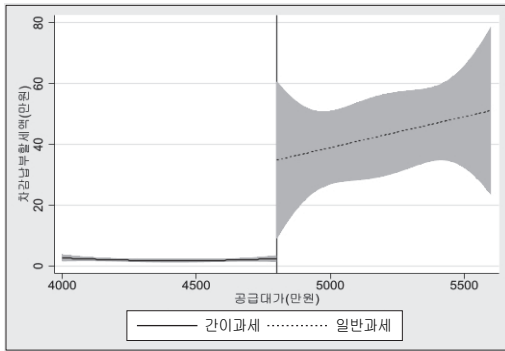
(c) 4,500~5,100만원 표본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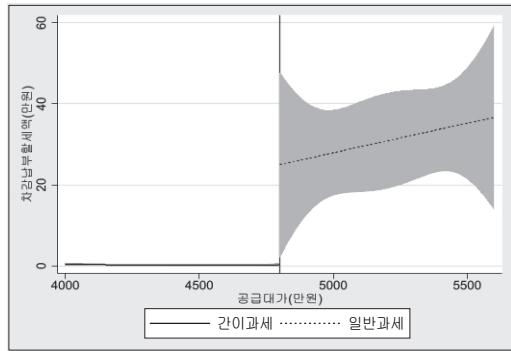
[그림 V-4]와 [그림 V-5]는 업태별로 4,800만원 근방에서의 납부세액을 비교한다. 기초 통계량으로 검토하였던 <표 V-1> 및 <표 V-2>와 비슷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림 V-4]와 [그림 V-5]에서는 4,800만원 근방에서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4]는 공급대가 4천만원에서 5,600만원에 대해 분포를 그렸으며, [그림 V-5]는 공급대가 4,700만원에서 4,900만원에 대해 분포를 확인하였다.

제IV장에서 [그림 IV-3]과 [그림 IV-4]에서 업태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집군 현상은 업태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요약하면 4,800만원 구간 주변에서 집군 현상이 관찰되는 업태는 소매업, 운송·창고·통신업, 대리·중개·도급업, 그리고 서비스업이다. [그림 V-4]의 경우, 소매업, 운송·창고·통신업, 대리·중개·도급업, 서비스업에서는 4,800만원 근방에서 납부세액이 99%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업태들에서는 납부세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그림 IV-3] 및 [그림 IV-4]의 결과와도 연결시켜 해석할 수 있다. 분포의 집군 현상은 납부세액의 크기와 관련 있을 수 있으며, 세제상의 이득이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인 때문에 앞선 [그림 IV-3]과 [그림 IV-4]에서 업태별로 4,800만원 근방에서의 분포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그림 IV-3] 및 [그림 IV-4]에서와 같은 분포의 집군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기 때문에, 연구 가설 2번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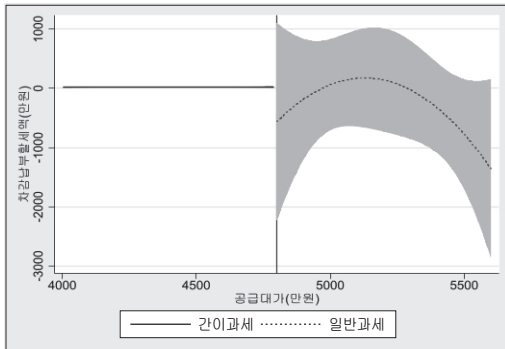
[그림 V-4] 업태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납부세액 비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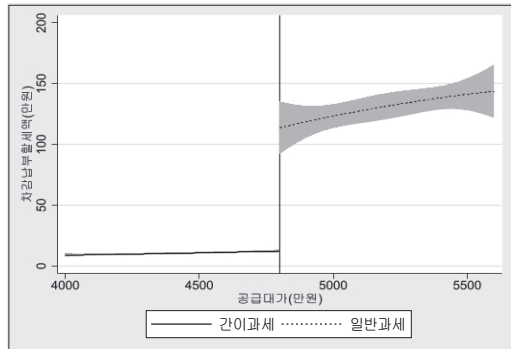
(a) 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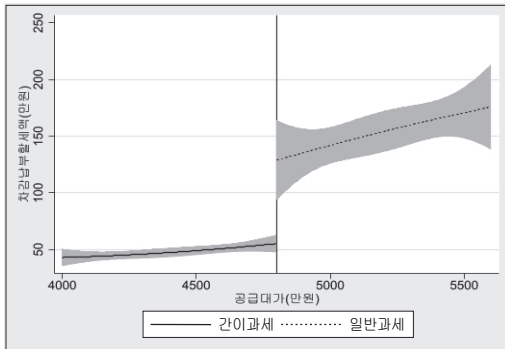
(b) 음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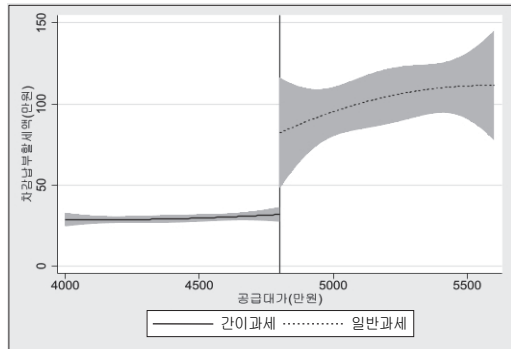
(c) 숙박업



(d) 운수·창고·통신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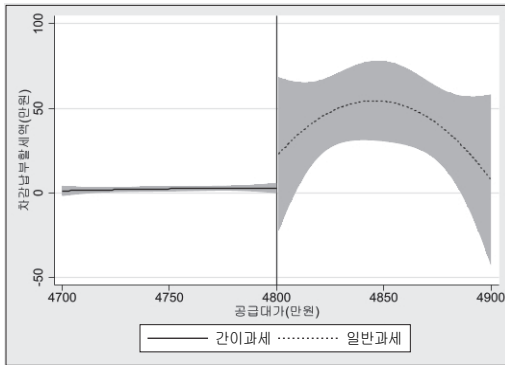
(e) 대리·중개·도급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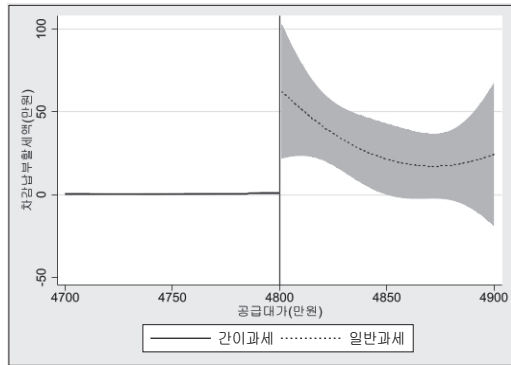
(f) 서비스업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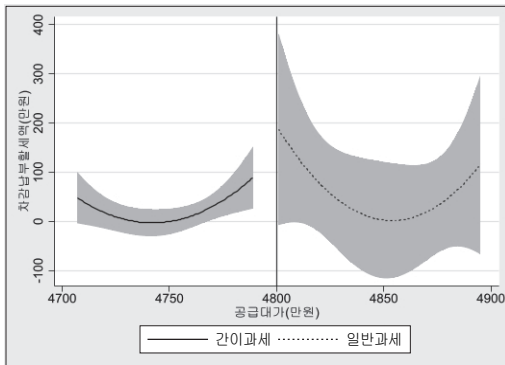
[그림 V-5] 업태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납부세액 비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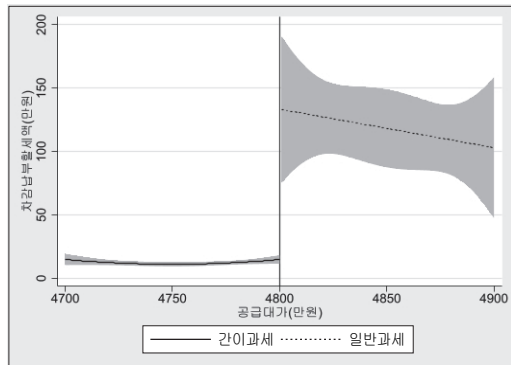
(a) 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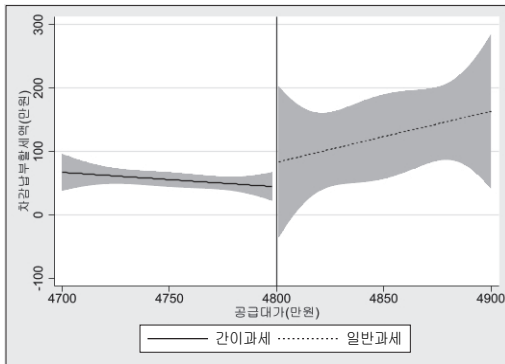
(b) 음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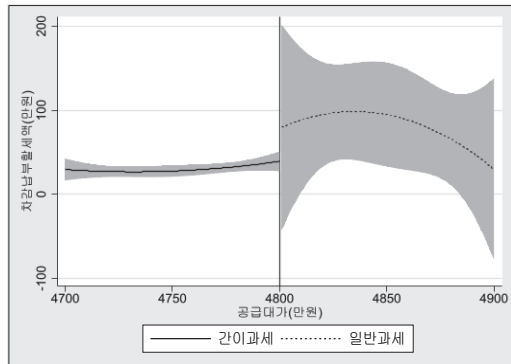
(c) 숙박업



(d) 운수·창고·통신업



(e) 대리·중개·도급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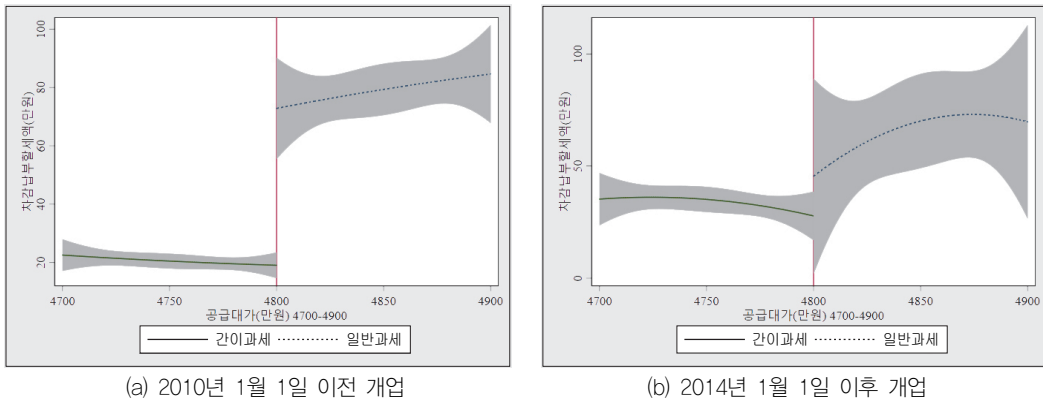


(f) 서비스업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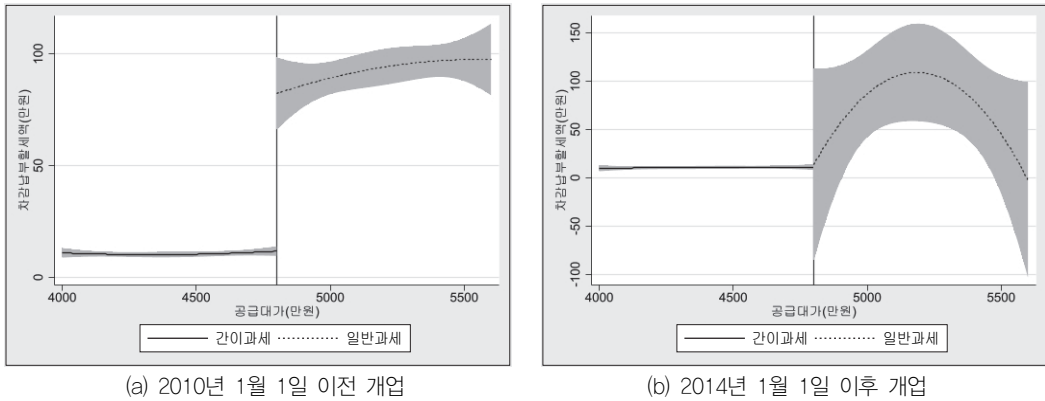
먼저 제IV장에서 분석하였듯이, 사업체의 개업일별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의 크기를 비교한다. 이는 제IV장에서 분석한 [그림 IV-5]와 연결시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언급하면 사업체의 개업일이 오래전일수록, 4,800만원 주변 구간에서의 집군 현상이 뚜렷이 관찰된다. [그림 V-6]과 [그림 V-7]은 앞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의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V-6]은 공급대가 4,700만원에서 4,900만원 사이 사업체들의 납부세액 크기를 비교하였으며, [그림 V-7]은 공급대가 4천만원에서 5,600만원 사이 사업체들의 납부세액 크기를 비교하였다. [그림 V-6]과 [그림 V-7]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공급대가 4,800만원 구간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차이가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체의 경우 그러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공급대가 구간을 좁혀서 분석하든지, 아니면 넓혀서 분석하든지 결과 해석의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연구 가설 2에 대해 추가적인 답변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6] 개업일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납부세액 비교(4,700만~4,900만원)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7] 개업일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납부세액 비교(4천만~5,6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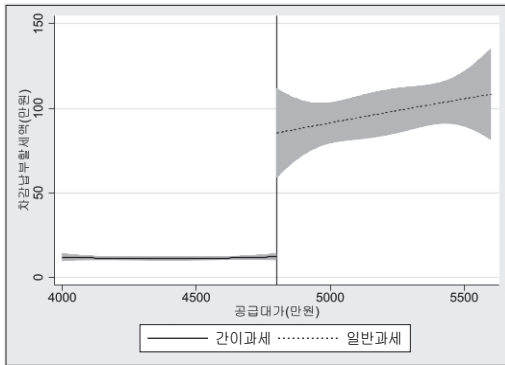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사업체의 지역별로 납부세액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림 V-8]과 [그림 V-9]는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별로 공급대가 4천만원에서 5,600만원 구간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는 제IV장에서 분포를 살펴본 [그림 IV-6] 및 [그림 IV-7]과 연계시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IV장에서 지역별로 4,800만원 주변 구간에서 분포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서울과 부산의 경우 분포의 집군 현상이 관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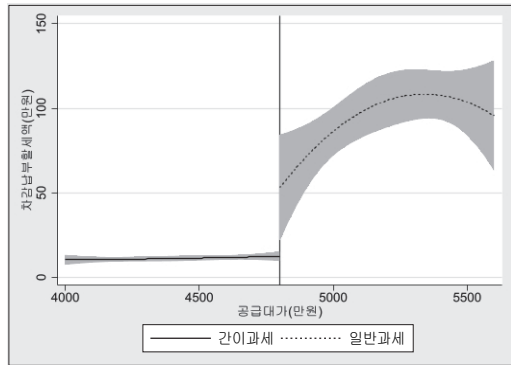
먼저 [그림 V-8]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경상도에 위치한 사업체의 경우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며, 다른 지역에서는 납부세액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매우 뚜렷한 차이와 차이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8]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통계적 신뢰수준 90%에서도 납부세액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

[그림 V-9]의 경우에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 동일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부산광역시 시에 위치한 사업체의 경우, 서울에 위치한 사업체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4,800만원 근방에서 일반사업자의 납부세액의 크기가 간이사업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났다. 이는 통계적 신뢰수준 90%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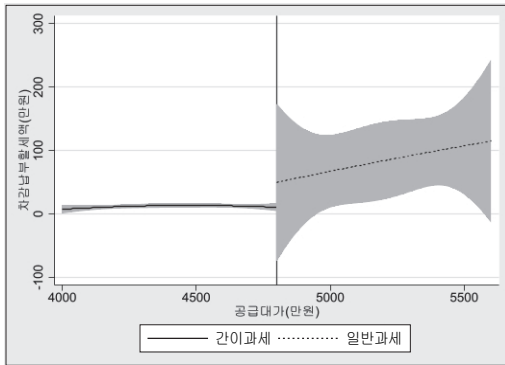
[그림 V-8] 지역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납부세액 비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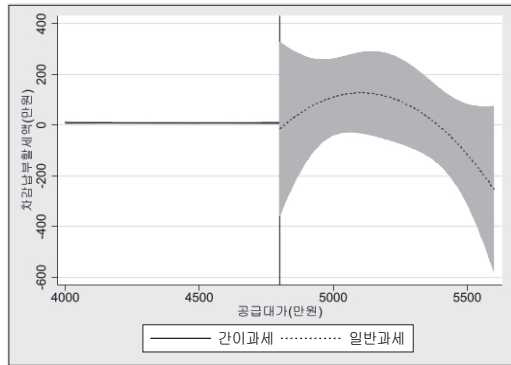
(a)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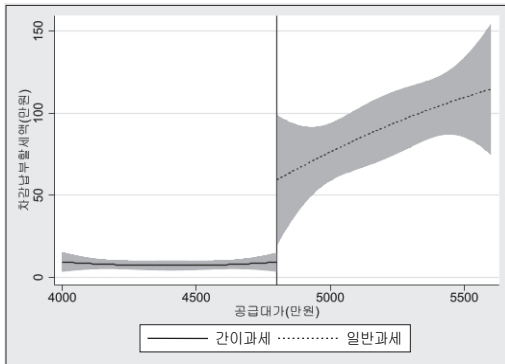
(b)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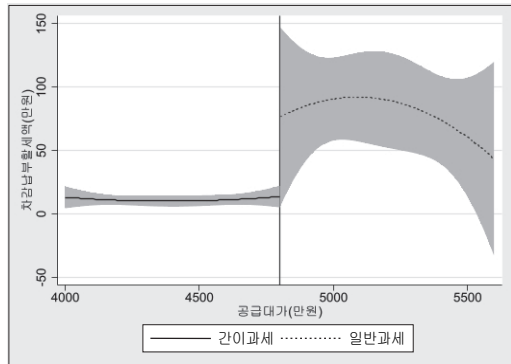
(c) 인천



(d) 전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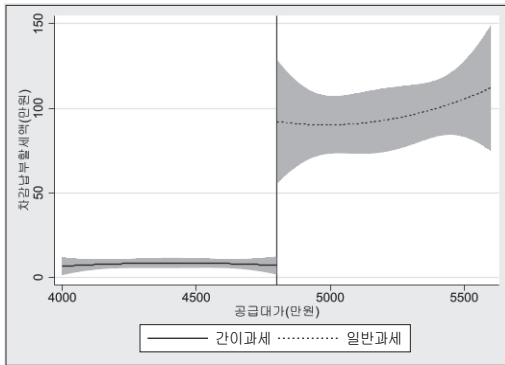
(e) 경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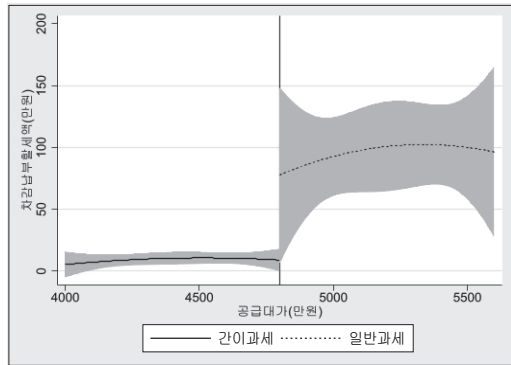
(f) 충청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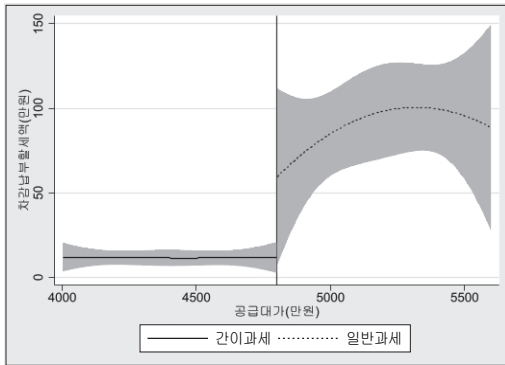
[그림 V-9] 지역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납부세액 비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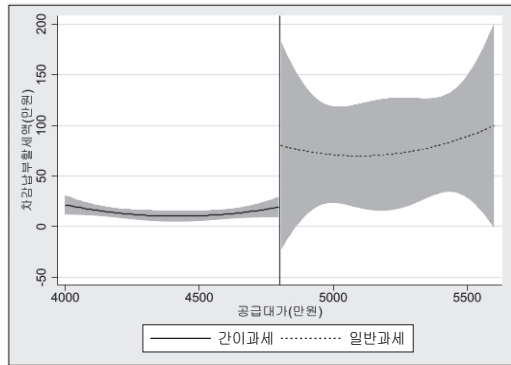
(a)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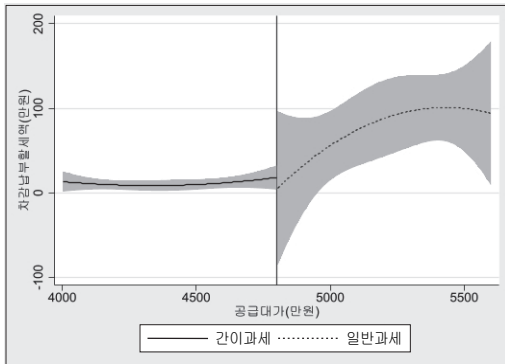
(b)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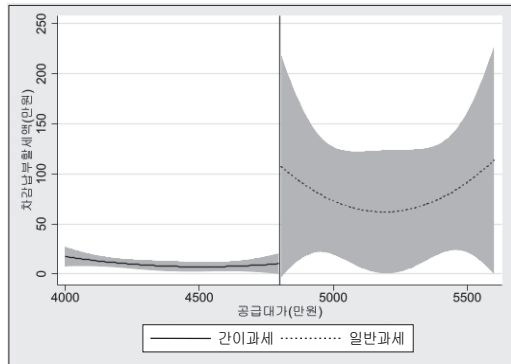
(c) 광주



(d) 대전



(e) 울산



(f) 강원도

자료: 저자 작성

이를 앞선 [그림 IV-6] 및 [그림 IV-7]과 연계하여 해석하면, 사업체가 서울과 부산에 위치한 경우 다른 지역에 위치한 경우와 달리 4,800만원 근방에서 분포의 집군 현상이 관찰되고, 동시에 납부세액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분포의 집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잠재적 설명으로 사업자들이 경감된 납부세액 유인에 대해 반응한 결과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그림 V-6]과 [그림 V-7]은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간이과세의 유인에 반응하여 사업자들이 의도적 매출 조정 등을 통한 납부세액의 절감을 기대한다면, 분포의 집군 현상이 관찰될 가능성이 있다. 언급하였듯이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얻은 경험으로 정보의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사업체 분포의 집군 현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V-8]과 [그림 V-9]를 통해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서울과 부산에 위치한 사업체의 경우 세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 좋기 때문에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의 사업체의 분포가 이질적으로 관찰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충 자료를 <표 V-3>~<표 V-5>에 지역별 세무법인의 분포를 제시하였다.

<표 V-3> 세무사 분포

(단위: 명, %)

구분	총회원 수	휴업회원	개업회원	구성비
서울	6,073	408	5,665	43.5
중부	2,175	76	2,099	16.1
부산	1,702	36	1,666	12.8
인천	1,363	38	1,325	10.2
대구	812	19	793	6.1
광주	734	7	727	5.5
대전	776	12	764	5.8
합계	13,635	596	13,039	10%

주: 1.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 『세무사신문』, 「세무사 회원 전체 1만3,635명, 세무법인 659개」, 2020. 6. 16.,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7039>, 검색일자: 2021. 2. 1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4〉 세무법인 분포

(단위: 개, %, 명)

구분	세무법인 수	세무법인 비중	구성원 수	구성원 비중
서울	372	56.45	2,680	59.52
중부	84	12.75	574	12.75
부산	79	11.99	490	10.88
인천	57	8.65	326	7.24
대구	24	3.64	163	3.62
광주	18	2.73	111	2.47
대전	25	3.79	159	3.53
합계	659	100	4,503	100

주: 1.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 『세무사신문』, 「세무사 회원 전체 1만3,635명, 세무법인 659개」, 2020. 6. 16.,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7039>, 검색일자: 2021. 2. 1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5〉 세무조정건수 분포

(단위: 건, %)

구분	법인세	법인세 비중	소득세	소득세 비중	성실신고	성실신고 비중
서울	150,715	39.02	399,162	41.50	39,159	32.03
중부	83,505	21.62	135,245	14.06	17,230	14.09
부산	55,412	14.35	137,007	14.24	22,442	18.35
인천	11,224	2.91	98,264	10.22	14,136	11.56
대구	27,853	7.21	68,600	7.13	12,860	10.52
광주	28,563	7.40	56,585	5.88	7,501	6.13
대전	28,958	7.50	66,967	6.96	8,944	7.31
합계	386,230	100	961,830	100	122,272	100

주: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 『세무사신문』, 「세무사 회원 전체 1만3,635명, 세무법인 659개」, 2020. 6. 16.,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7039>, 검색일자: 2021. 2. 1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0년 5월 기준으로 세무사로 등록된 총 1만 3,635명 중 서울에 등록된 회원은 6,073명으로 등록 세무사의 약 43.5%를 차지하고 있다. 세무법인의 분포를 나타내는 〈표 V-4〉를 살펴보면, 전체 등록 세무법인 659개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세무법인의 수는 372개로 그 비중이 56%를 넘었으며, 세무사를 포함한 세무법인의 구성원 수는 전체 대비 비중이 약 60%에 가깝다. 〈표 V-5〉는 세무조정건수의 현황을 보여주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정보는 없지만 법인세 및 소득세 처리 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본다. 법인세의 경우 서울지역에서 담당하는 세무조정건수는 15만 715건으로 전체 38만

6,230건 대비 약 40%이며, 소득세 부분도 약 40%대에 달한다. 이러한 통계를 토대로, 서울 지역에서 세무 정보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사업체의 수가 많기 때문에 세무 법인의 숫자가 많은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표 V-6>은 『국세통계연보』의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수와 세무법인 수를 비교하였다. 세무법인 자료가 서울, 중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라 사업체 수를 계산하였다. 중부의 경우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포함한다. 또한 세무법인 분포 자료가 2020년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비슷한 2019년 귀속 자료만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표 V-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사업자 사업체 1개당 세무법인의 수는 서울 지역의 경우 0.04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이사업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 위치한 간이사업체 1개당 세무법인의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세무법인의 숫자와 같은 기초 통계자료만을 활용하여 세무 정보의 접근 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다. 다만 본 소절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 지역이 상대적으로 세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suggestive) 보여주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종합해 보면, 상대적으로 정보의 접근성이 높은 서울 및 부산 지역에서 4,800만원 주변에서 사업체 분포의 군집 현상과 납부세액 크기의 분절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6> 지역별 사업자 및 세무법인 분포

(단위: 명, 건, %)

구분	일반사업자(A)	간이사업자(B)	세무법인 수(C)	100*C/A	100*C/B
서울	916,420	288,932	372	0.041	0.129
중부	1,346,601	416,290	84	0.006	0.020
부산	272,264	110,392	79	0.029	0.072
인천	259,013	81,614	57	0.022	0.070
대구	188,301	83,013	24	0.013	0.029
광주	104,108	47,376	18	0.017	0.038
대전	107,198	52,549	25	0.023	0.048
합계	4,366,053	1,632,285	659	0.015	0.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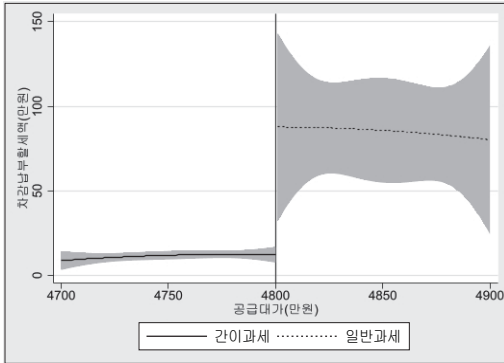
자료: 『세무사신문』, 「세무사 회원 전체 1만3,635명, 세무법인 659개」, 2020. 6. 16.,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7039>, 검색일자: 2021. 2. 1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지역별 개업일에 따른 납부세액의 크기를 비교해 본다. 이 분석은 앞선 [그림 IV-8]과 [그림 IV-9]에 대응하는 분석이다. 우선 [그림 V-10]과 [그림 V-11]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개업일이 오래된 사업체들만 분석하였을 경우, 4,800만원 주변 근방에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간 납부세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99% 신뢰수준). 이는 앞선 개업일에 따른 분포 분석과 납부세액의 비교 검토에서 도출한 결론과 유사한 결론을 제시한다. 사업체의 업력이 길수록 대체적으로 지역과 상관없이 납부세액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현상이 분포의 집군 현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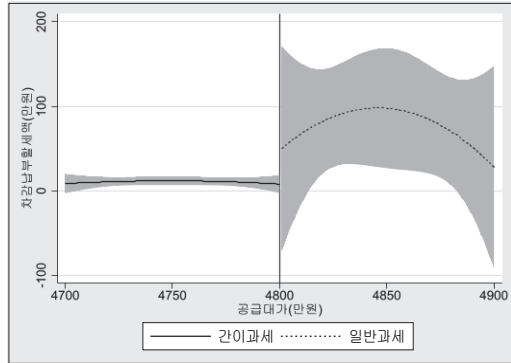
[그림 V-10] (a), (b)의 서울에 위치한 2010년 이전 개업한 사업체를 분석한 결과와 2014년 1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IV-8]의 서울 지역의 분포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 V-11] (g), (h)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2010년 이전 개업한 사업체 분석 결과와 2014년 1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서울 지역 분석과 마찬가지로 [그림 IV-9]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울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사업체일 경우 개업일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관찰되는데, 납부세액의 크기 역시 이 두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앞선 설명과 연결시켜 해석하면 세무 정보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을수록, 그리고 납세 과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많을수록, 간이과세 기준금액 구간 주변으로 사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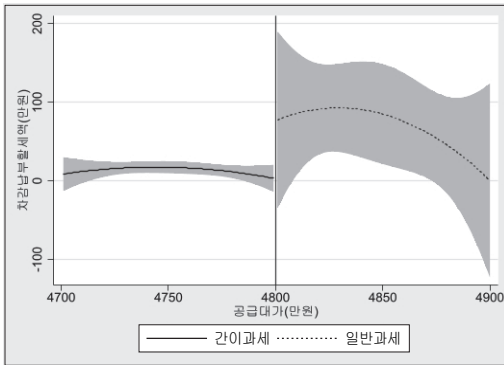
[그림 V-10] 지역별 및 개업일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납부세액 비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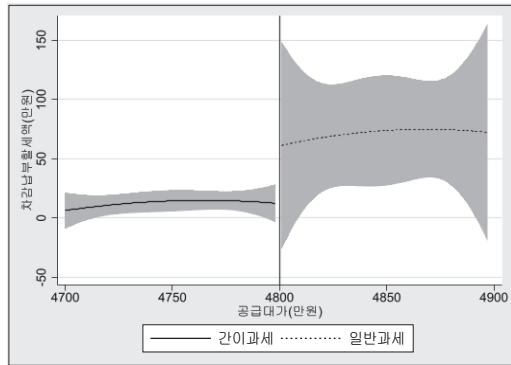
(a) 서울 2010년 1월 이전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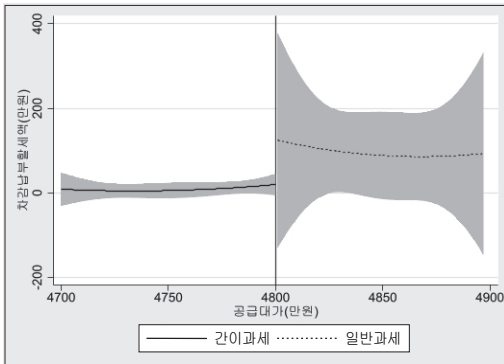
(b) 서울 2014년 1월 이후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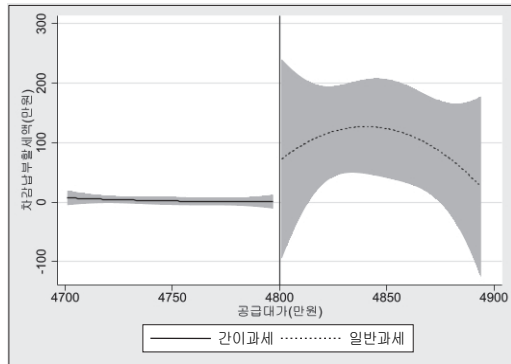
(c) 경기도 2010년 1월 이전 개업



(d) 경기도 2014년 1월 이후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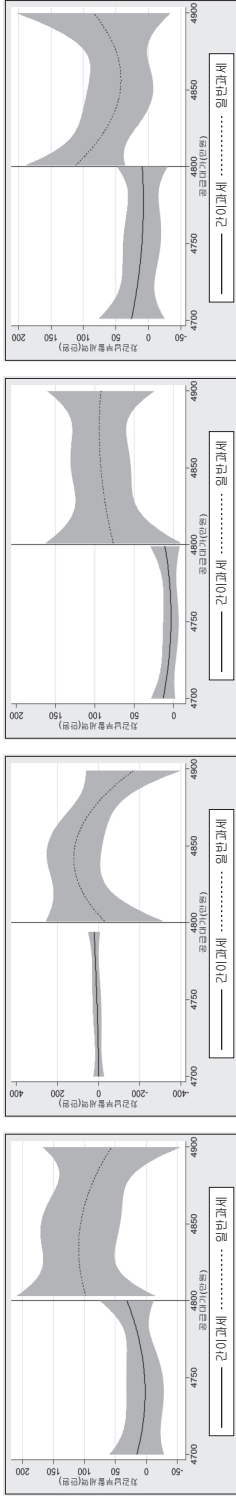
(e) 인천 2010년 1월 이전 개업



(f) 인천 2014년 1월 이후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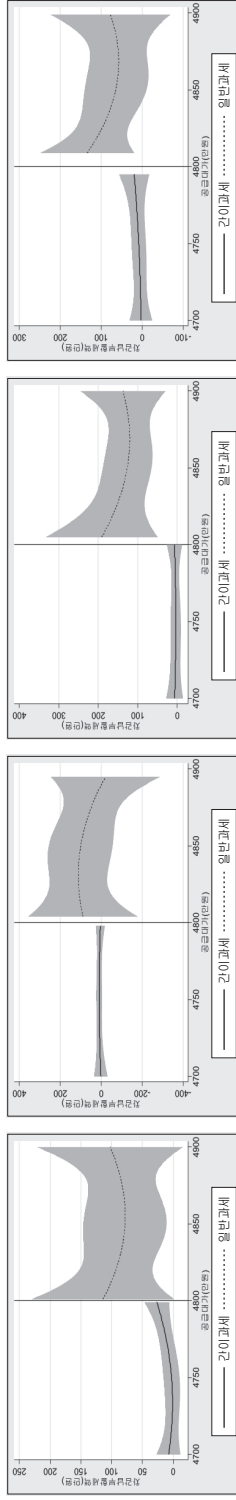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11] 지역별 및 개업일별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납부세액 비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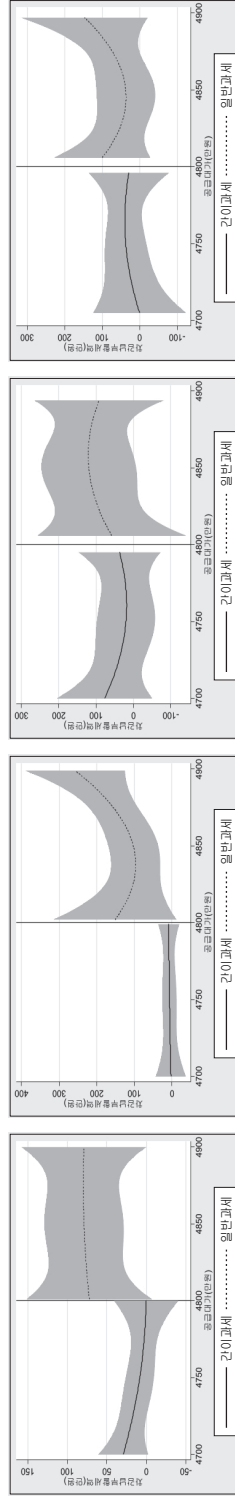
(a) 경상도 2014년 1월 이후 개업

(c) 경상도 2010년 1월 이전 개업



(h) 부산 2014년 1월 이후 개업

(g) 부산 2010년 1월 이전 개업



(l) 대전 2014년 1월 이후 개업

(k) 대전 2010년 1월 이전 개업

자료: 저자 작성

3. 소결

지금까지 제 V장에서는 4,800만원 주변 구간에서의 납부세액 크기를 그래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연구 가설 2 ‘사업체들의 4,800만원 주변 구간에서의 분포 집군 현상은 세제 혜택 유인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에 대한 검토이다. 사업체 분포의 군집 현상이 발견된 경우, 4,800만원 주변에서 납부세액의 분절 현상이 관찰되었다.

본 장의 분석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앞서 살펴본 분포의 집군 현상은 제 V장에서 살펴본 납부세액의 불연속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전체 표본에 대해서만 비슷한 현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이질적인 분포에 대해서도 납부세액의 불연속성이 발견되는 것은, 사업자들이 4,800만원 근방에서 공급대가를 조절함으로써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행동이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성급하게 탈세 혹은 절세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사업자들의 4,800만원 근방에서의 행동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납세 부담의 감소와 관련 있을 수 있다. 세무법인의 분포를 통해 지역별로 세무 정보 접근성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본고에서 제시한 근거는 간접적(suggestive)으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연구 가설 3에 대해 검토한다. 지금까지 분포의 집군 현상과 납부세액의 분절 현상을 연결시켰다. 이러한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 간이과세 납부세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납부세액의 분절 현상이 관찰되는 이유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가설 3을 검토하기 위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현재와 다르게 조정되면, 사업체의 분포 패턴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려 한다.

VI. 업종별 부가가치율

1.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개괄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에서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VI-1>은 2020년 이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2021년부터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국세통계연보』 14개 업태를 기준으로 재정리하였다. 2021년 간이과세의 기준금액 인상과 함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함께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소매업과 음식점업의 경우 2020년 이전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였던 반면, 2021년부터는 15%로 인상되었고, 운수·창고·통신업은 종전 20%에서 30%로 상승하였다. 한편 숙박업의 경우에는 2020년 이전에는 20%였다가, 개편을 통해 25%로 5%p 상승하였으며,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30%에서 2021년부터는 40%로 10%p 증가한 비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전기·가스·수도업과 상품중개업 등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추가되었다.

<표 VI-1> 간이과세제도 업종별 부가가치율

(단위: %)

구분	2020년 이전	현행
농·임·어업	20	20
광업	-	-
제조업	20	20
전기·가스·수도업	5	-
도매업	-	-
소매업	10	15
부동산매매업	30	40
건설업	30	30
음식점업	10	15
숙박업	20	25
운수·창고·통신업	20	30
부동산임대업	30	40
대리·중개·도급업	30	-
서비스업	30	3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701&lsiSeq=224329#0000>, 검색일자: 2021. 2. 15.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국세통계연보』는 매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그 수치를 제공한다.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에 대해서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수치를 제시하며, 간이사업자들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제시하지 않는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보통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부가가치액을 계산한 후 이를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간이사업자들의 경우 매입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통계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2>와 <표 VI-3>은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수치는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를 과표 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의 평균값을 계산한 것으로서, 간이과세제도에서 중요한 간이과세자 혹은 공급대가 4,800만원 구간 주변에서의 업종별 부가가치율과는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통계연보』에서는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각각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 평균값을 제시하며, 본고에서는 일반 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만을 제시하였다. <표 VI-4>는 연도별로 1기 신고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2기 신고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평균하여 제시하였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리한 결과, 농·임·어업의 경우 13~55%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계산되었으며, 연도별 평균치를 살펴보면 약 35~45% 사이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매업의 경우 약 13~14%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25% 전후로 계산되었으며, 숙박업의 부가가치율 역시 음식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산된다. 대리·중개·도급업과 서비스업은 분석 결과 약 50%대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반적인 패턴은 <표 VI-1>에서 살펴본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패턴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여 시행령으로 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 VI-2>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매출액 크기에 상관없이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표 VI-1>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정확한 산출 정보라 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는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2〉 국세통계연보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평균 1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농·임·어업	54.6	34.1	51.1	23.8	46.5	43.1	49.8	29.5
광업	38.1	41.1	37.4	42.4	41.8	41.2	40.4	37.8
제조업	37.2	37.5	38.1	37.4	38.0	37.6	39.5	39.2
전기·가스·수도업	4.3	-69.6	-50.8	-156.4	-245.5	-380.7	-288.0	-170.3
도매업	16.9	17.1	17.1	17.1	16.8	11.3	16.9	17.4
소매업	11.4	11.0	11.5	11.1	12.9	6.4	12.9	12.8
부동산매매업	19.7	10.1	19.2	3.2	34.5	23.0	10.5	4.0
건설업	46.5	48.3	47.4	48.9	47.4	48.4	47.2	48.3
음식업	23.2	23.1	22.2	24.7	25.6	25.4	26.9	27.0
숙박업	12.8	15.4	13.7	20.5	14.6	17.9	15.6	13.2
운수·창고·통신업	37.0	37.4	12.7	40.8	40.8	41.4	45.6	46.0
부동산임대업	54.4	55.4	57.4	53.8	54.3	44.9	43.8	29.7
대리·중개·도급업	61.7	61.1	59.0	60.2	60.2	59.3	65.7	64.8
서비스업	54.0	51.6	54.1	51.6	53.2	45.9	55.4	53.5

주: 1. 2013년은 2012년 귀속, 2014년은 2013년 귀속, 2015년은 2014년 귀속, 2016년은 2015년 귀속임
2. 일반사업자 기준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재가공

〈표 VI-3〉 국세통계연보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평균 2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농·임·어업	41.2	13.0	48.6	25.5	40.3	30.1	47.1	32.0
광업	42.1	50.0	47.9	47.6	49.0	46.3	50.6	41.6
제조업	40.6	39.3	40.3	33.8	40.1	39.3	40.8	40.2
전기·가스·수도업	-45.7	-52.3	-61.4	-148.2	-126.7	-213.4	-176.7	-231.5
도매업	17.2	17.8	17.7	18.2	18.3	18.7	18.9	19.2
소매업	13.7	13.0	14.1	13.2	13.5	14.0	14.2	14.3
부동산매매업	8.3	1.9	4.5	-20.8	-7.7	-13.4	-22.7	-5.1
건설업	46.1	47.1	46.1	47.2	46.7	47.3	47.6	49.5
음식업	28.7	11.4	11.2	30.2	31.9	23.3	33.1	17.1
숙박업	16.7	21.3	19.9	25.9	27.1	33.1	28.2	34.8
운수·창고·통신업	45.9	44.9	32.1	44.0	43.7	21.0	45.6	46.4
부동산임대업	33.6	23.3	27.5	25.2	32.8	35.3	46.0	46.8
대리·중개·도급업	64.7	63.0	62.9	61.2	60.8	59.5	58.2	58.6
서비스업	54.6	51.7	39.8	39.4	52.6	50.2	51.1	49.5

주: 1. 2017년은 2016년 귀속, 2018년은 2017년 귀속, 2019년은 2018년 귀속, 2020년은 2019년 귀속임
2. 일반사업자 기준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재가공

〈표 VI-4〉 국세통계연보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연도별 평균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농·임·어업	44.35	37.45	44.8	39.65	27.1	37.05	35.2	39.55
광업	39.6	39.9	41.5	39.1	46.05	47.75	47.65	46.1
제조업	37.35	37.75	37.8	39.35	39.95	37.05	39.7	40.5
전기·가스·수도업	-32.65	-103.6	-313.1	-229.15	-49	-104.8	-170.05	-204.1
도매업	17	17.1	14.05	17.15	17.5	17.95	18.5	19.05
소매업	11.2	11.3	9.65	12.85	13.35	13.65	13.75	14.25
부동산매매업	14.9	11.2	28.75	7.25	5.1	-8.15	-10.55	-13.9
건설업	47.4	48.15	47.9	47.75	46.6	46.65	47	48.55
음식업	23.15	23.45	25.5	26.95	20.05	20.7	27.6	25.1
숙박업	14.1	17.1	16.25	14.4	19	22.9	30.1	31.5
운수·창고·통신업	37.2	26.75	41.1	45.8	45.4	38.05	32.35	46
부동산임대업	54.9	55.6	49.6	36.75	28.45	26.35	34.05	46.4
대리·중개·도급업	61.4	59.6	59.75	65.25	63.85	62.05	60.15	58.4
서비스업	52.8	52.85	49.55	54.45	53.15	39.6	51.4	50.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재가공

본고에서는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인 무작위 개별 미시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금액 구간별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는 연구 가설 3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또한 미시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에는 제시할 수 없었던 간이과세자들의 부가가치율을 공급대가 구간별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선 〈표 VI-2〉~〈표 VI-4〉와 같이 업태별로, 그리고 과표 구간별로 간이과세자들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한 결과는 본고에서 제시하지 못한다.¹⁹⁾ 다만 [그림 VI-1]을 통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비교는 제시한다. 이는 추후 설명한다.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괴리 현상이다. 분명한 점은 모든 업태에서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시행령으로 적용하는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2020년 이전)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간이과세자들의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2020년 이전에 적용하였던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비교해 보면 그 괴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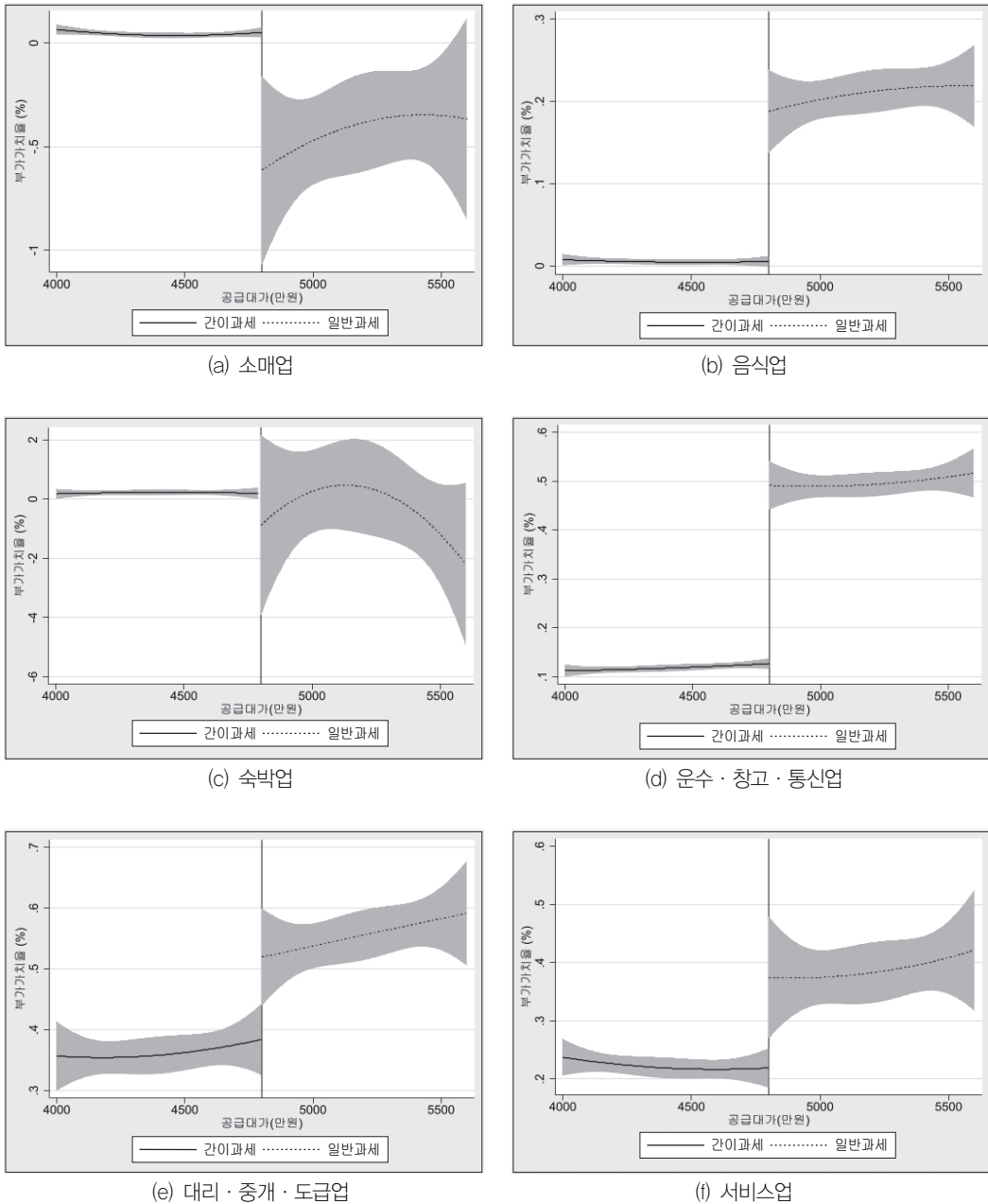
19) 국세청 국세통계센터로부터 관련 결과에 대한 반출이 허용되지 않았다.

더 크다. 이는 간이과세제도가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정책적 결정이라 볼 수 있다.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설정하여 그만큼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만약 과세당국이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기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면, 사업자들의 세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결국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 수준의 결정은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언급하였듯이 여러 정책적 효과를 감안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주체의 행위를 왜곡할 수 있는 지나친 세부담의 격차는 간이과세의 본래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면 지양하는 것이 좋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 VI-1]²⁰⁾은 4,800만원 근방에서 사업체들의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앞선 제IV장과 제V장의 분석 결과의 해석과 연결시킬 수 있다. 소매업의 경우 4,800만원 근방에서 일반과세자들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더 낮은 이유는 매출이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99% 신뢰수준). 다른 업종들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특히 앞선 분석에서 4,800만원 주변에서 사업자 분포의 집군 현상이 관찰되는 업종들은 운수·창고·통신업, 대리·중개·도급업, 그리고 서비스업이었다. [그림 VI-1]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세 업종의 2020년 기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일반과세자들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800만원 근방에서 사업체들 분포의 집군 현상이 뚜렷하였던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2020년 적용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이다. [그림 VI-1] (d)를 살펴보면, 4,800만원 근방에서 일반과세자들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40%를 넘는다. 만약 일반과세자들이 간이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 20%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산술적으로 사업자들이 창출해 낸 부가가치보다 더 낮은 부가가치율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세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기대하는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4,800만원 근방에서 사업자들 분포의 집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 그림 y축의 부가가치율(%) 해석은 제시된 y축 값에 100을 곱한 값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림 VI-1]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비교



자료: 저자 작성

반면에 [그림 VI-1] (b)의 음식점업의 경우, 비록 4,800만원 근방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나,

2020년 음식점업에 부과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로, 실제 일반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운수·창고·통신업과 대비된다. 따라서 음식점업의 경우 간이과세 선택에 대한 유인의 크기가 운수·창고·통신업에 비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사업체 분포의 집군 현상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2.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을 통한 분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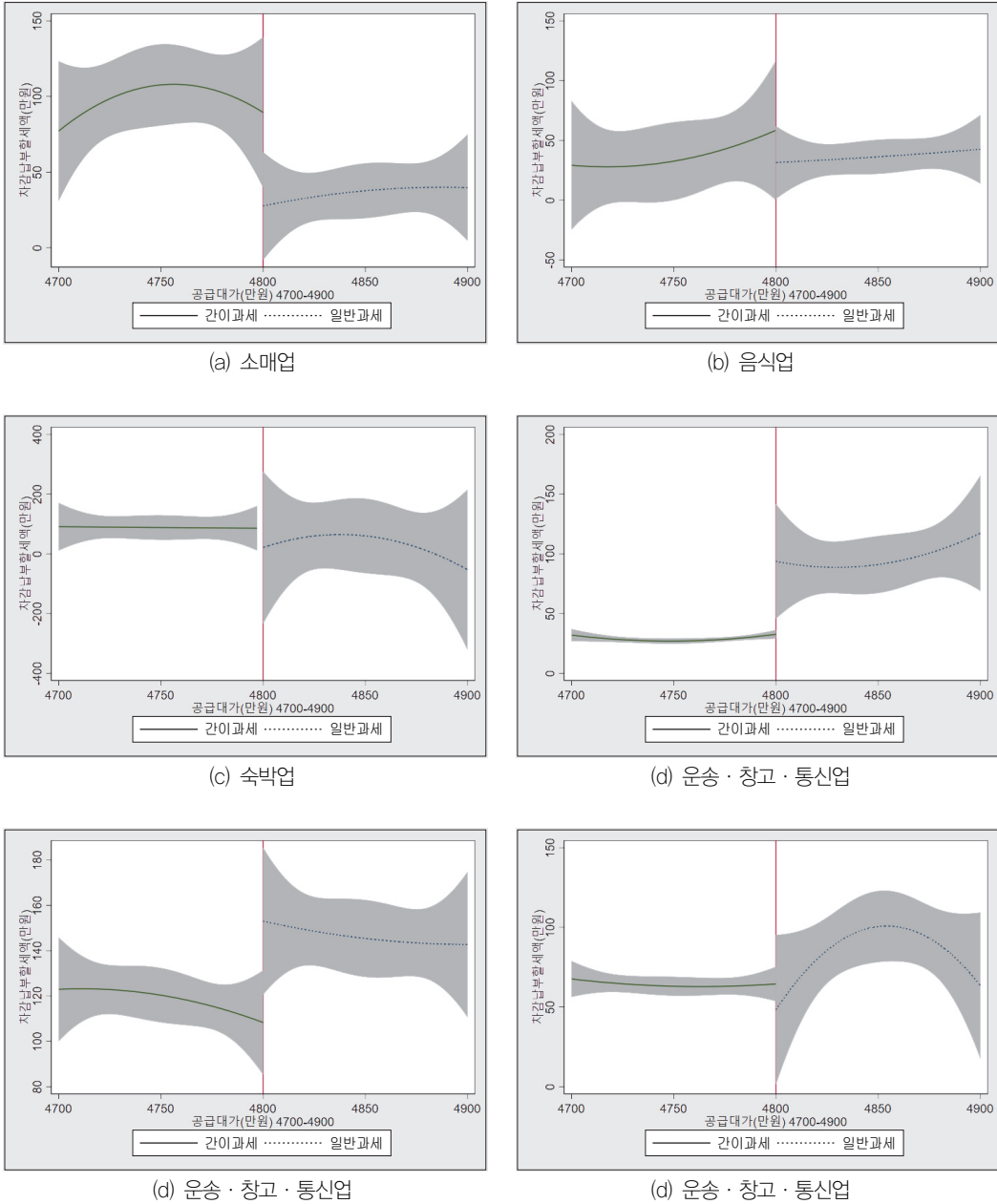
앞서 지속적으로 논의한 것의 핵심은 실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사업체 분포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할 경우,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것은 간이과세자들이 부담하는 납부세액의 증가이다. 결과적으로 4,800만원 근방에서 간이사업자들의 납부세액과 일반사업자들의 납부세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조정을 통해 일반사업자들의 의도적인 경제적 행태 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간 세부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업종별로 4,800만원 주변에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이론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VI-2] 및 [그림 VI-3]은 분석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간이사업자들의 실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현재 적용 중인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 대신 적용하였을 경우,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들의 납부세액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도 분석하겠지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변경하였을 경우, 사업체들이 내생적으로 세율 변화에 반응함에 따라 분포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림 VI-2]는 분포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하였을 경우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가 부담하는 납부세액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한다.

[그림 VI-2]는 공급대가 4,700만원에서 4,900만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납부세액의 크기를 비교하였으며, [그림 VI-3]은 공급대가 4,700만원에서 4,9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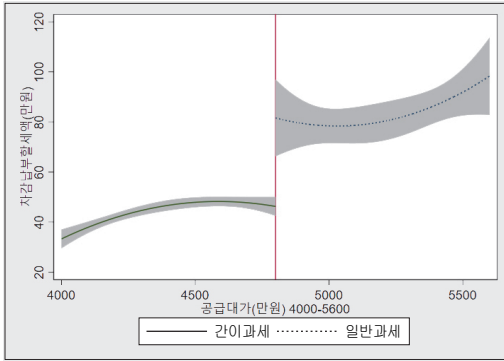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별로 납부세액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이 그림은 앞선 [그림 V-4]와 [그림 V-8]을 연계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림 VI-2]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후 납부세액 비교 - 사업체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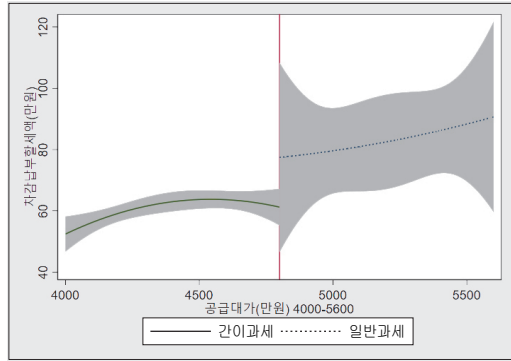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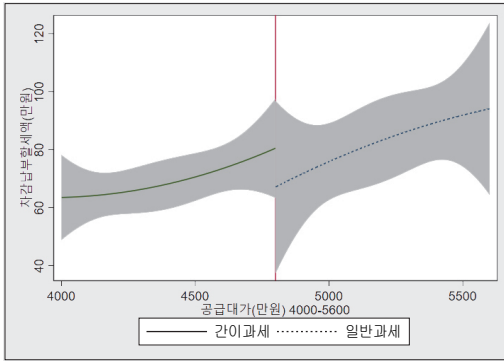
[그림 VI-3]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후 납부세액 비교 - 사업체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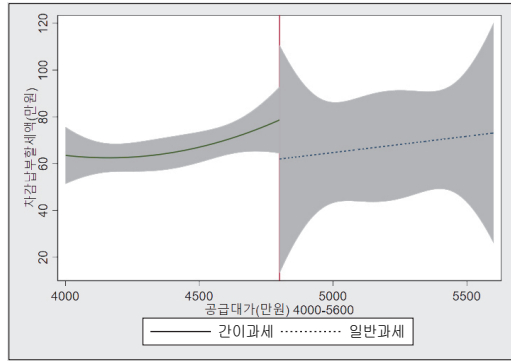
(a)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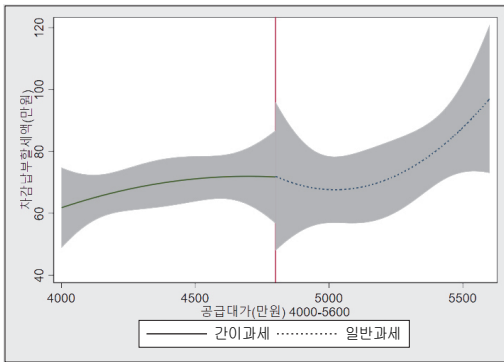
(b)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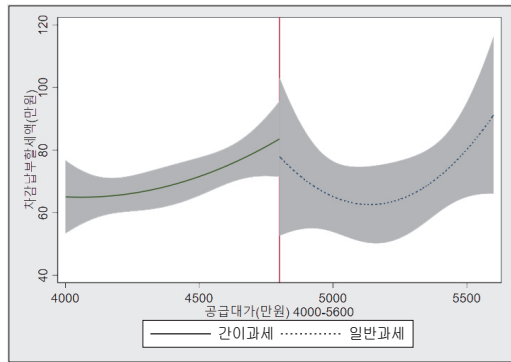
(c) 인천



(d) 전라도



(e) 경상도



(f) 충청도

자료: 저자 작성

먼저 [그림 VI-2]와 [그림 V-4]를 비교할 때, 뚜렷하게 차이나는 부분은 운수·창고·통신업이다. [그림 V-4]에서 운수·창고·통신업은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가 4,800만원 주변에서 납부세액의 크기가 크게 차이가 난 반면,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였을 때 두 사업 집단의 납부세액의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림 VI-3]은 [그림 V-8]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편의상 [그림 VI-3]은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대해서만 검토하였다. 서울 지역의 경우 여전히 4,800만원 주변에서 99% 신뢰수준에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간 납부세액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만, 앞선 [그림 V-8]에 비해 그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인상할 경우, 4,800만원 주변에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세부담 크기의 차이는 많이 감소할 것이다. 사업체들의 경제적 행동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된 정책 목적으로 삼는다면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인상을 통해 행동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선 납부세액 크기의 변화는 사실 당연한 결과이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기본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크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과연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면, 앞서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사업체 분포의 집군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본 소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가정을 통해 분포의 시뮬레이션을 시도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자들의 잠재적인 참된 과표²¹⁾를 추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4,800만원보다 훨씬 큰 6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 이들이 4,800만원 구간을 선택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유인은 4,800만원 근방의 사업체보다는 적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체의 참된 과표는 신고된 금액인 6천만원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약 4,750만원을 신고한 사업체라면, 참된 과표일 수도 있으나 의도적으로 매출을 조정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체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사업체의 참된 과표를 추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조정된다면, 이 사업체는 더 이상 간이과세를 선택하지 않고 참된 과표를 신고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21) 본고에서 참된 과표라고 정의한 것은 간이과세제도가 없었을 경우의 과표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되면 사업체의 분포가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위해 먼저 각 사업체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율은 앞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과표에서 매입과표를 차감한 후 이를 매출과표로 나누어 계산한다. 공급대가 4,800만원 근방의 간이사업자 중, 사업체의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20년 적용 중인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높은 경우, 부가가치율의 차이만큼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추정할 수 있는 참된 과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과표금액에 세제 혜택 부분만큼을 더한 부분이라 가정할 수 있다. 요약하면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높은 사업체의 경우, 간이사업자를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유인이 존재하며 그 혜택의 크기만큼 과표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참된 과표는 이러한 혜택의 크기를 더한 값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2018년,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통해 살펴본 분포와 달라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설정에서 사업체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업종별 부가가치율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분포의 시뮬레이션을 검토한다. 첫 번째는 『국세통계연보』에 제시된 일반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간이과세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세통계연보』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를 과표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본고의 분석에 사용된 4천만원에서 5,600만원 사이 분석 자료 표본 사업자들의 실제 부가가치율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다. 세 번째는 본고의 분석에 사용된 4천만원에서 5,600만원 사이 분석 자료 표본 사업자들의 실제 부가가치율의 하위 20% 값을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간이과세제도의 현실적 정책 목표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간이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낮은 수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1년 이후 적용되는 간이과세의 새로운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다.

다만 시뮬레이션에는 몇 가지 강한 가정이 요구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변화될 경우, 사업체들의 행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인데, 이를 20%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에서 20% 사이에 위치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더 이상 간이과세를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의 크기는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된다. 이럴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된다면, 공급대가 4,800만원 주변에서의 분포는 달라질 수 있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세제 혜택이 없어질 경우, 사업체들은 모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를 선택하게 됨을 가정한다. 또한 사업체들이 세율 변화에 반응하는 방법이 매출과표 조정에 국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실제로는 매입과표를 조정할 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마지막 강한 가정은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차이가 나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 사업체가 모두 ‘의도적’으로 매출 조정을 하지는 않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한 가정들은 추후 연구에서 수정 및 적용을 통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강한 가정을 바탕으로 세율이 변화하였을 경우의 반사실적인(counterfactual) 사업체의 매출과표를 계산하여 분포를 그린다. 이때 일반과세 대신 간이과세를 선택한 사업체들의 반사실적인(counterfactual) 과세표준 규모는 신고된 과세표준에 간이과세를 선택함에 따라 얻게 되는 세제혜택의 크기를 더한 값이 되며,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ext{반사실적인 과세표준} = \text{신고된 과세표준} + \text{식 (1)} \\ \text{일반과세를 선택했다면 납부해야 했을 세액} - \\ \text{간이과세를 선택하여 납부한 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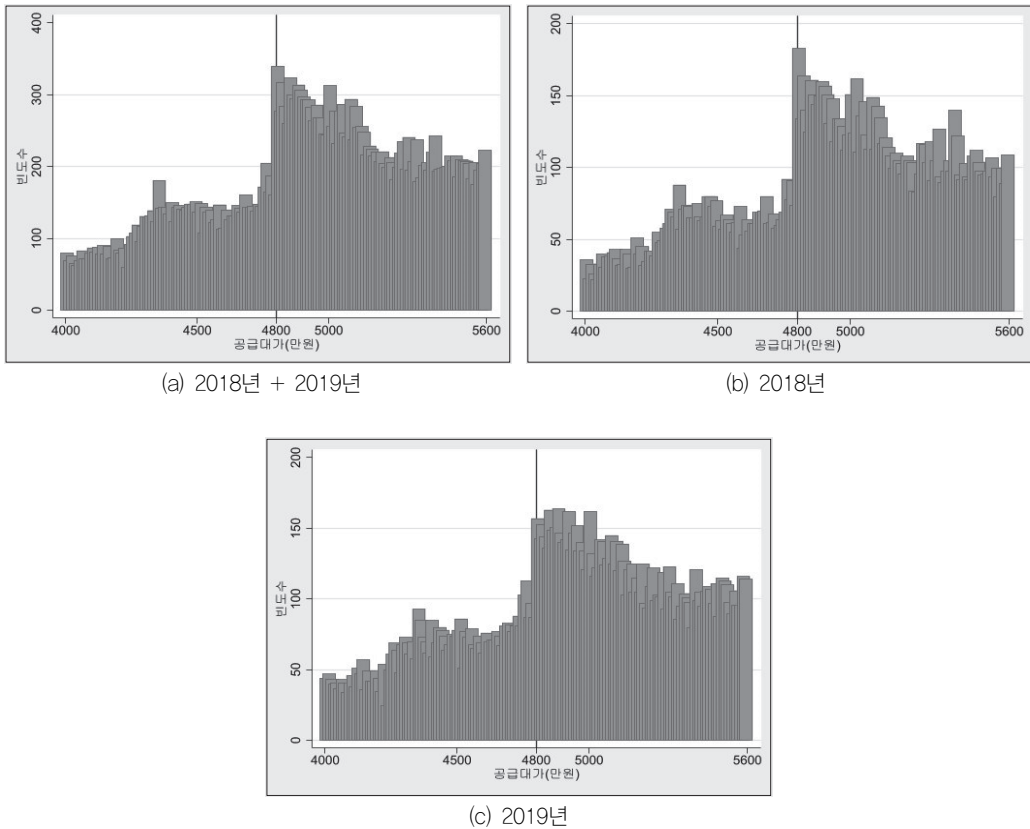
반사실적인 과세표준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일반과세를 선택했다면 납부해야 했을 세액의 크기이다. 왜냐하면 이 값은 실제 신고자료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 값의 대리값(proxy)으로 실제 신고된 과세표준과 매입금액의 차이에 부가가치율 10%를 곱하여 사용한다.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연구 가설 3에 대해 검토한다.

[그림 VI-4]는 『국세통계연보』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예상되는 사업체 분포이다. 이를 [그림 IV-1]과 비교하면, 4,800만원 주변 구간에서의 집

군 현상의 정도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의 경우 4,800만원에서 집군 현상이 관찰되는 듯하지만, 전체적으로 분포의 집군 현상이 많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연도별로 2018년과 2019년 각각 확인하여도 결과는 비슷하다. 이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상승에 따라 납부세액의 이윤이 감소하여 사업자들이 반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I-4] 국세통계연보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시 분포 변화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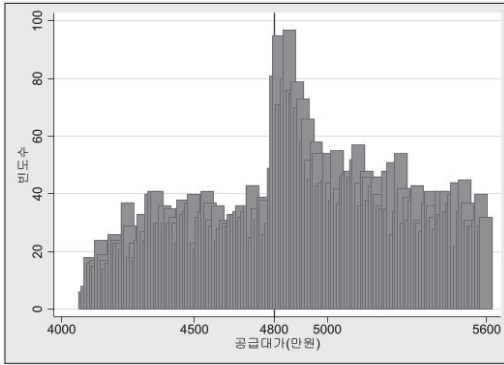
업종별로 사업체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국세통계연보』에 제시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사업체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그림 VI-5] (a)의 소매업의 경우는 여전히 4,800만원 근방에서 집군 현상이 발견된다. 반면 [그림 VI-5] (d)의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

가치율을 『국세통계연보』의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면, 분포의 집군 현상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뚜렷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림 IV-4] (b)와 비교해 보면 차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재해석하자면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2020년 기준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통해 사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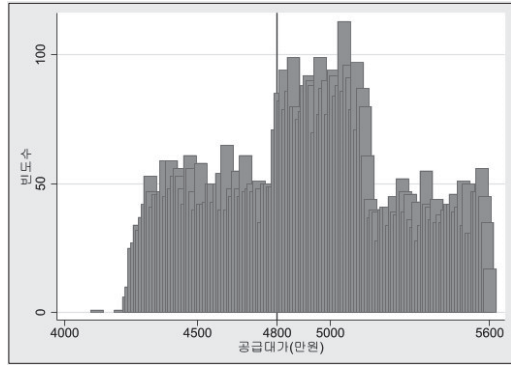
두 번째 시나리오로서 본고에서 사용한 2018년,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표본의 실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의 중간값을 적용할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VI-6] 및 [그림 VI-7]은 앞선 분석과 동일한 분석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국세통계연보』의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집군 현상이 뚜렷하였던 운수·창고·통신업의 집군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인상할 경우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과의 차이 정도에 따라 업종별로 분포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며, 분포의 집군 현상의 완화도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세 번째(분석 자료의 하위 20%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네 번째(21년 이후 개정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검토하였는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한다. 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네 번째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2021년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상향 조정하였다. 조정 폭은 『국세통계연보』 평균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2021년에 개정된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할 경우 역시 사업체 분포의 집군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종에서는 새롭게 4,800만원 주변 구간에서 집군 현상이 발견된다. 이는 업종별 특징을 고려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미세한 설정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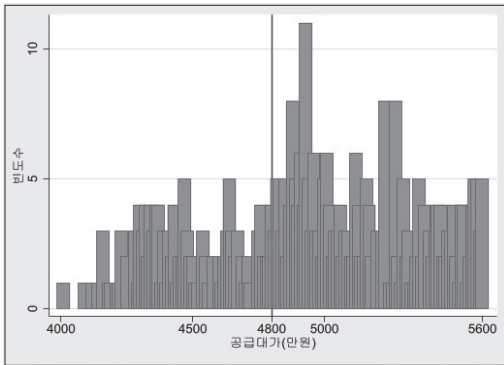
[그림 VI-5] 국세통계연보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시 업종별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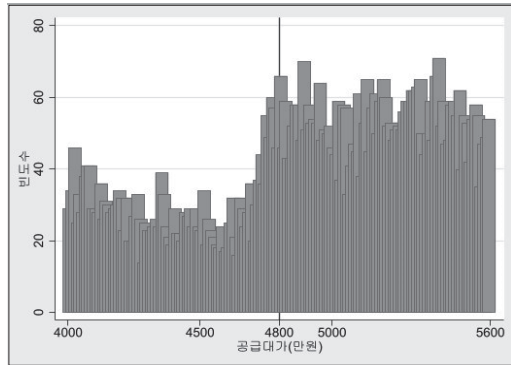
(a) 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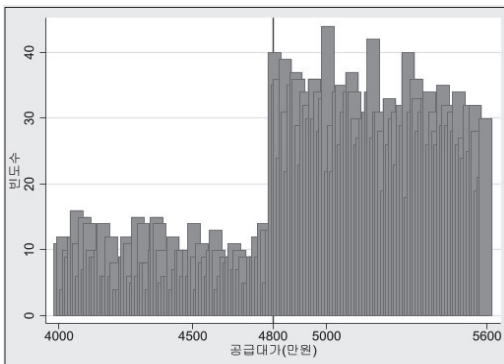
(b) 음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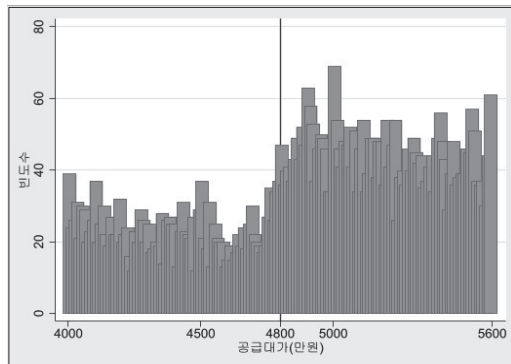
(c) 숙박업



(d) 운수·창고·통신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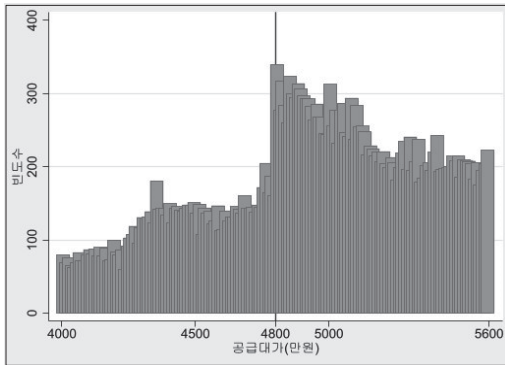
(e) 대리·중개·도급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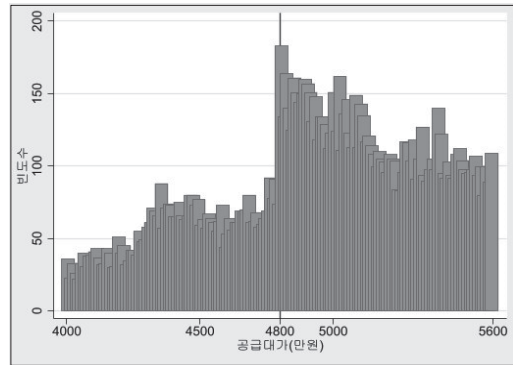
(f) 서비스업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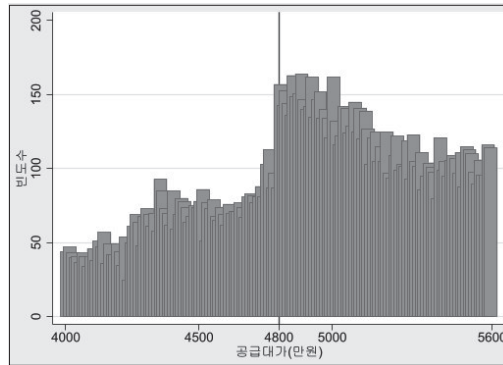
[그림 VI-6] 분석자료 업종별 부가가치율 중간값 적용 시 분포 변화



(a) 2018년 +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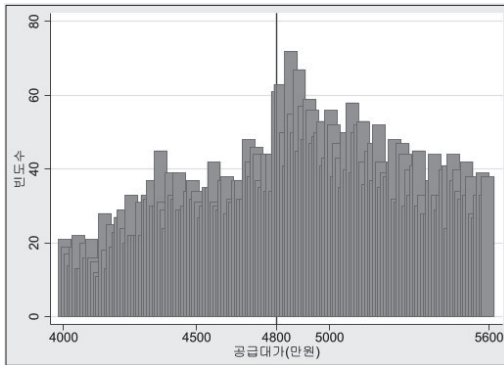
(b)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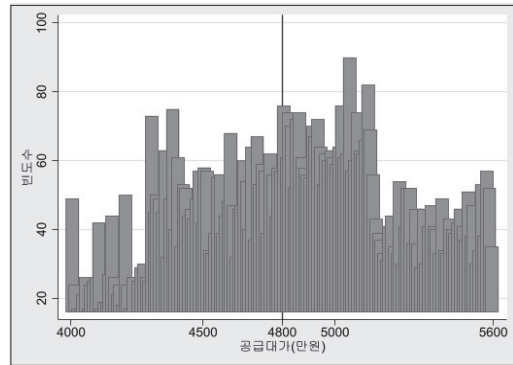
(b)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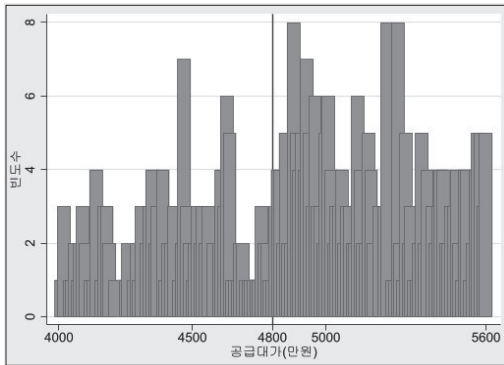
[그림 VI-7] 분석자료 업종별 부가가치율 중간값 적용 시 업종별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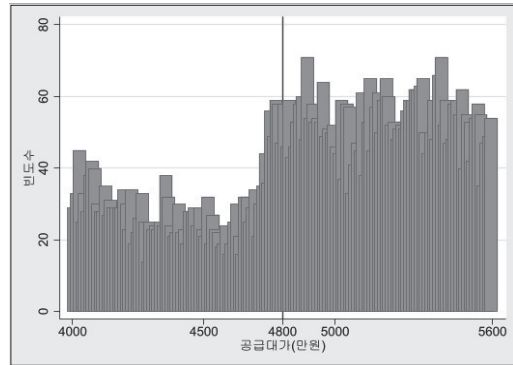
(a) 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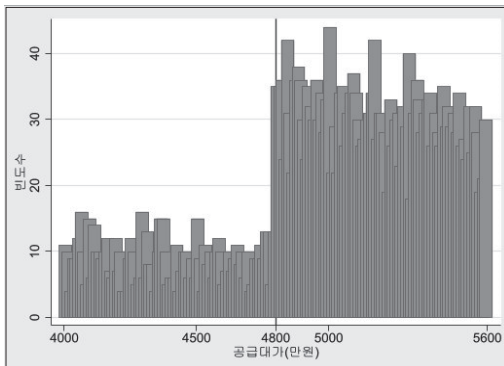
(b) 음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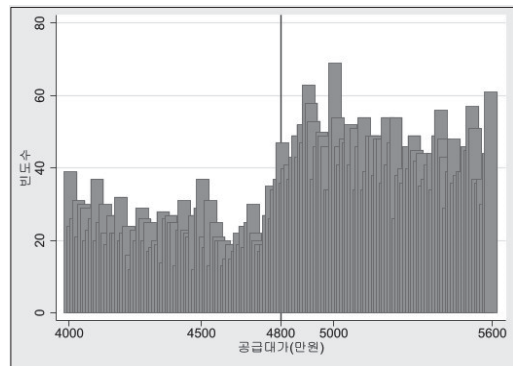
(c) 숙박업



(d) 운수·창고·통신업



(e) 대리·중개·도급업



(f) 서비스업

자료: 저자 작성

3. 소결

본 장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조정이 있을 경우 예상되는 사업체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반사실적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강한 가정이 사용되어, 실제 사업체의 미시적 행동 변화는 계산 과정에서 무시된 한계가 존재한다. 분석 표본자료가 패널자료였다면, 좀 더 미세한 행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간이과세 적용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인상은 4,800만원 근방에서 일반사업자의 간이과세 선택 유인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행동의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이상적인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설정은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간 세부담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지 않으면서 매출과표에 따라 자연스럽게(연속적으로)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형태일 것이다. 사실 본고에서는 업종별로 적절한 수준의 부가가치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자료 제약과 국세청 국세통계센터의 자료 반출 여건 등을 이유로 분석에 제한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세부담의 크기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크기를 계산하여, 정책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물론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설정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또한 경제 주체들이 조세시스템에 반응하여 합법적인 선에서 자신의 행태를 조절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경제적 효율성 외에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현행과 같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의도적으로 낮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 제시한 것처럼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하위 25% 혹은 하위 50% 값 등 다양한 수치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실제 미시자료를 토대로 분포의 패턴을 살펴본 후, 업종별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매년, 혹은 정기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검토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간이과세제도의 본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상적인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수준에 대한 고려가 궁극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검토는 본고에서 제시한 것처럼 실

제 미시자료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업체들의 분포를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업종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단순경비율 제도에서 운영하는 세분화된 기준과 같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단순경비율 제도와 같이 매우 세세한 수준으로 운영하는 데 따르는 행정 비용이 클 경우, 적정한 수준에서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여 실제 미시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간이과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시자료를 활용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연구가 추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고에서는 간이과세제도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연구 가설 1—사업자들은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 자신의 매출을 조정하거나 매입을 조정하는 형태로 간이과세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연구 가설 2—이러한 분포의 이질성은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의 세제 혜택에 따른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실제로 4,800만원 근방에서 분포의 집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업자들이 기준금액 주변에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태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업종별, 지역별, 사업체의 업력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사업체가 서울에 위치해 있거나, 업력이 오래된 사업체일수록 분포의 집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발견하였으며, 이 역시 세부담의 분절 현상과 연관되어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세무 정보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세무 정보의 접근성이 높은 사업체가 비교적 경제적 행위의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추측되며, 이러한 가능성이 사업체 분포의 집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개별 사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최적(optimal)의 의사결정일 수 있으나, 경제적 행동의 의도적 왜곡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는 최적화된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과세 당국이 간이과세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러한 왜곡을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토해 본 연구 가설 3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조정을 통한 왜곡의 시정이다. 4,800만원 근방에서의 사업체 분포는 세부담과 관련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의 납세 부담은 매출과표와 표준 부가가치세율, 그리고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연구 가설 3을 검토한 결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2020년 기준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할 경우 4,800만원 근방에서 사업체 분포의 집군 현상은 많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업종별 부가가

치율의 조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경제적 유인을 조정할 경우, 사업체 분포 왜곡의 시정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시키는 세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인 사업자들의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간이과세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연구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간이과세 및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연구는 대부분 집계된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데 그쳤다면, 본고는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한 점이 큰 차이점이다. 또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근방에서의 사업자들 분포 행태를 저자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으로 검토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에 대한 증거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여전히 아쉬움은 많이 존재한다. 좀 더 많은 표본, 가능하다면 전수자료를 토대로 동일한 분석을 시도하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는 변수가 제약되어 있었는데, 최소한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에 있는 모든 변수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제시되면 추후 간이과세제도와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결정에 중요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앞선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분석은 강한 가정을 요구한다. 추후 사업체별 패널자료를 통해 사업체들의 과표 조정 및 유인에 대한 반응 행태를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세입의 확보를 통한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을 준 세제로, 다른 세목에 비해 안정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장점이 있다.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10% 단일세율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세율 변화에 따른 왜곡 가능성이 없는 효율적인 세금으로 평가 받는다. 또한 고령화·저출산을 비롯하여 향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재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근로소득 및 소득세 감소와 세계 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는 법인세 세입의 변동성은 향후 우리나라 세입 기반 불확실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는 앞선 두 세목에 비해 세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우리나라 세입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세입 기반을 넓히고 부가가치세의 예외 사항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1년부터 20년만의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적용된다. 간이과세자들에게 지나친 세제 혜택을 지양하기 위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역시 조정되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부수적인 요건도 추가되었다. 비록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으로 정상 부가가치세의 예외 대상자가 증가하였지만, 경제적 효율성 손실을 최소화하려 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선택은 합리적 선택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선 논의처럼 세입 기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선택은 매우 중요했다고 평가된다.

향후 검토해야 할 것은 4,800만원 기준금액 주변에서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가 관찰되었듯이, 상향 조정된 8천만원 기준금액 주변에서도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가 관찰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비록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8천만원 금액 주변에서의 실제 사업자들 부가가치율 역시 상향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준에 따라 사업자들의 선택 조정에 대한 유인은 반드시 존재한다. 8천만원 금액 주변의 사업자들이 4,800만원 주변 사업자들에 비해 절대적인 숫자가 더 많다면, 8천만원 근방에서의 경제적 왜곡의 크기는 더욱 클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세율 조정을 통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빈번한 세율 조정 역시 경제적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과 적절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고민이 추후 연구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납세 행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단순 경비율 제도처럼 업종을 좀 더 세분화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설정할 경우, 보다 세밀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남례 · 김원배,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연구」, 『기술경영』, 제 3권 제4호,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2018, pp. 25~4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김승래 · 박명호 · 홍범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나성길 · 신민호 · 정지선, 『부가가치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9.

박명호 · 성명재, 『간이과세제도 합리화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12.

서동국 · 허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3.

서정우, 「간이과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연구: 독일 · 일본 · 중국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16권 제6호, 한국세무학회, 2015, pp. 239~266.

심충진 · 김진태,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20, pp. 37~61.

정유석, 「주요 세목별 조세지원제도의 운영과 합리적인 세제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86호, 한국국제회계학회, 2019, pp. 75~96.

최명근 · 나성길, 『부가가치세법론』, 세경사, 2007.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제사』, 한국조세연구원, 2012.

E. Kou, Y. Sun and L. Yue, “The response of small firms to VAT thresholds: Evidence from China,” *Applied Economics Letters*,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undefined>, 검색일자: 2021. 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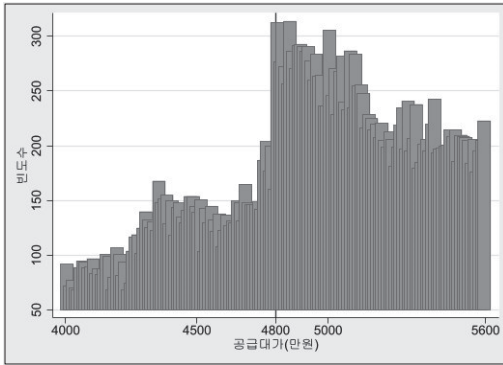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https://datalab.nts.go.kr>

삼일인포마인, 「부가가치세 세율 및 업종별 부가가치율」, <http://www.samili.com/tax/BugaRate.asp>, 2021. 1. 18., 검색일자: 2021. 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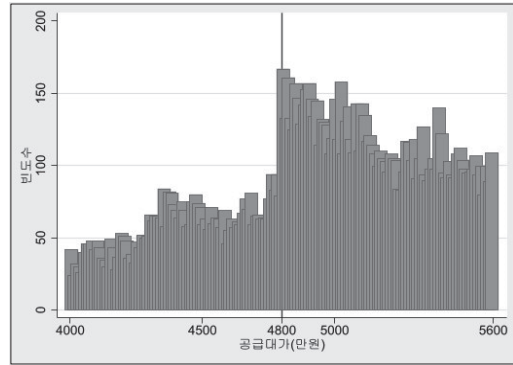
『세무사신문』, 「세무사 회원 전체 1만3,635명, 세무법인 659개」, 2020. 6. 16.,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7039>, 검색일자: 2021. 2. 15.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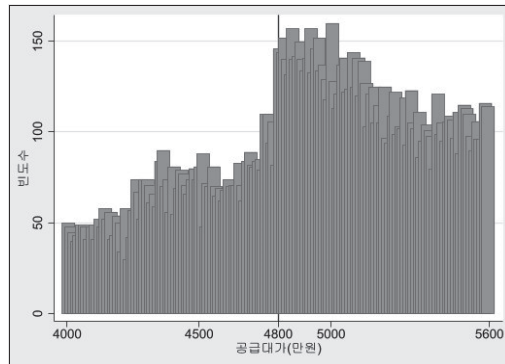
[부그림 1] 분석자료 업종별 부가가치율 하위 20% 적용 시 분포 변화



(a) 2018년 +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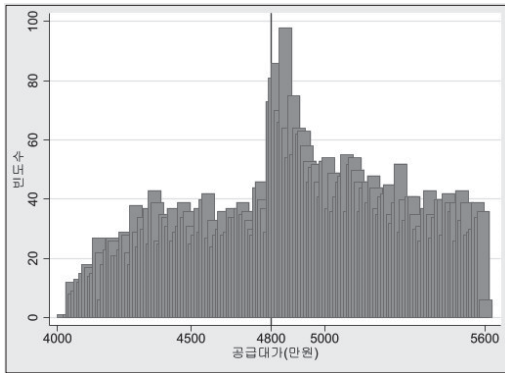
(b)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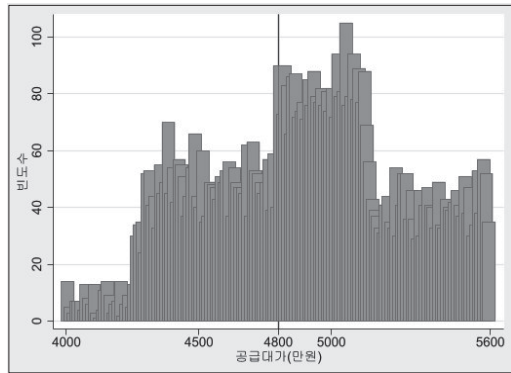
(c)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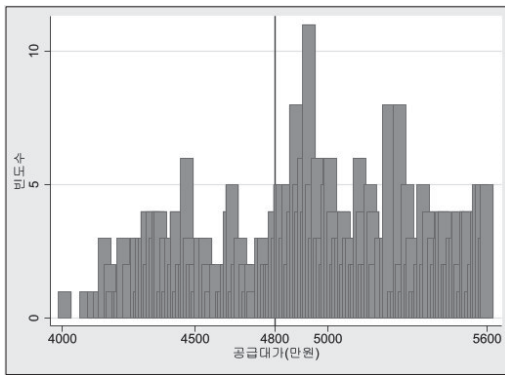
[부그림 2] 분석자료 업종별 부가가치율 하위 20% 적용 시 업종별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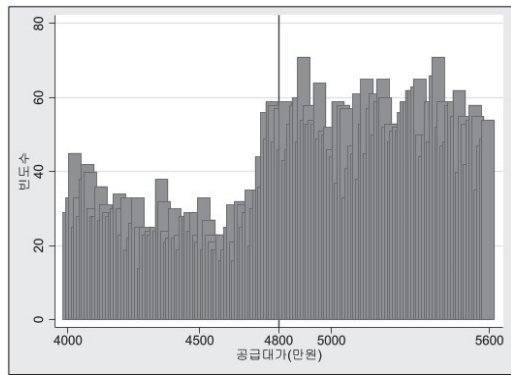
(a) 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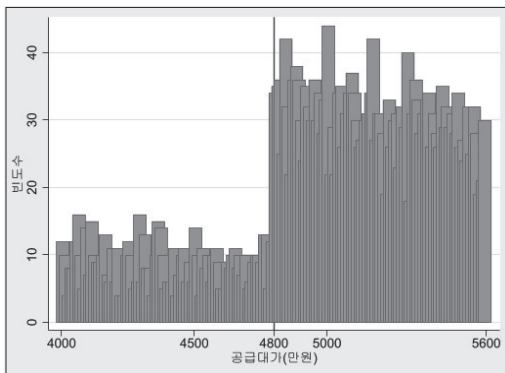
(b) 음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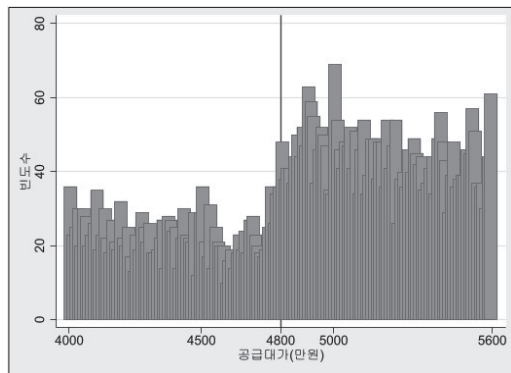
(c) 숙박업



(d) 운수·창고·통신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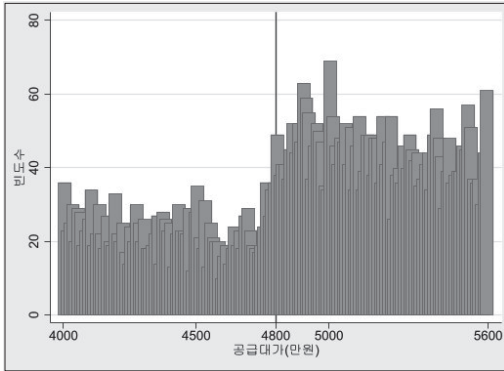
(e) 대리·중개·도급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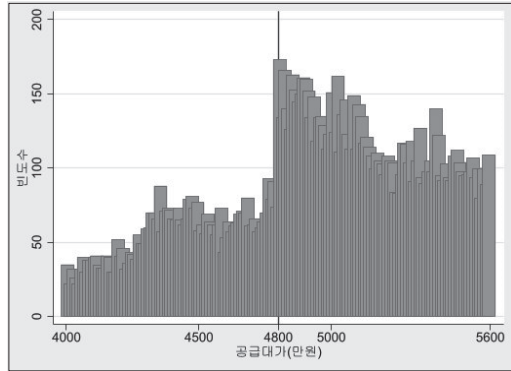
(f) 서비스업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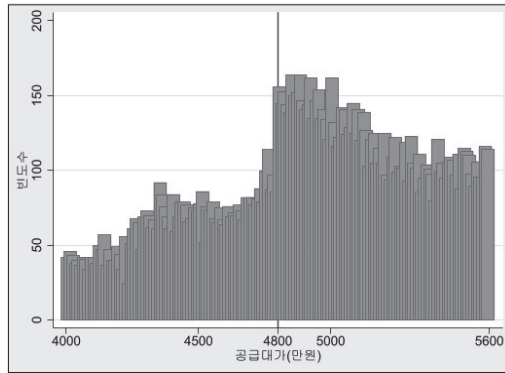
[부그림 3] 2021년 개정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시 분포 변화



(a) 2018년 +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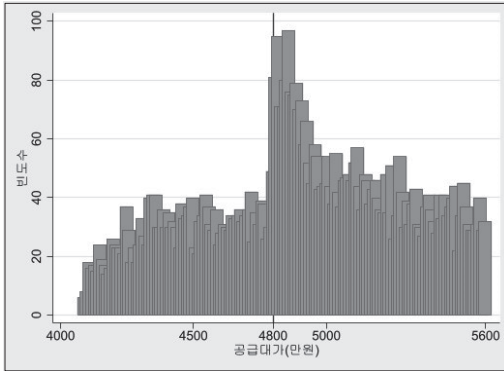
(b)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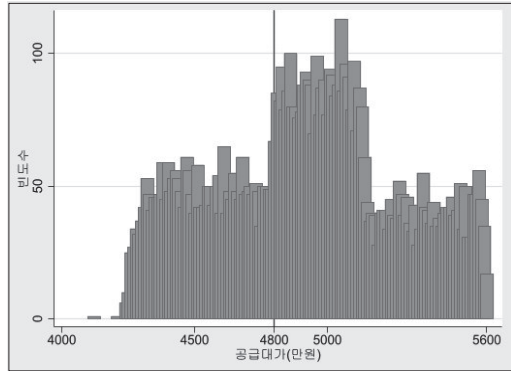
(c)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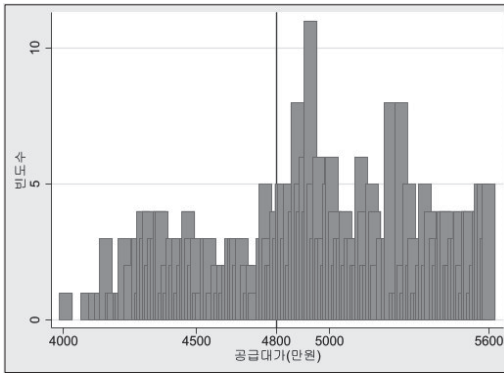
[부그림 4] 2021년 개정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시 업종별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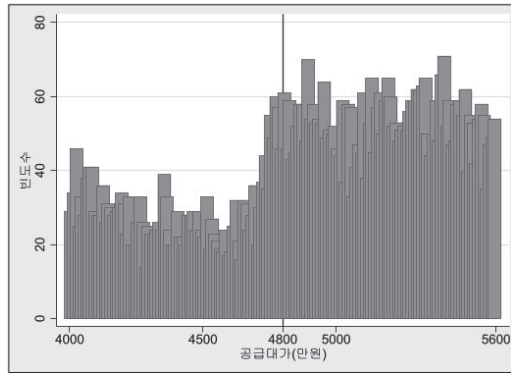
(a) 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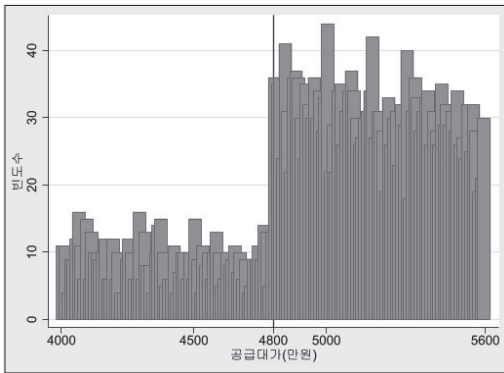
(b) 음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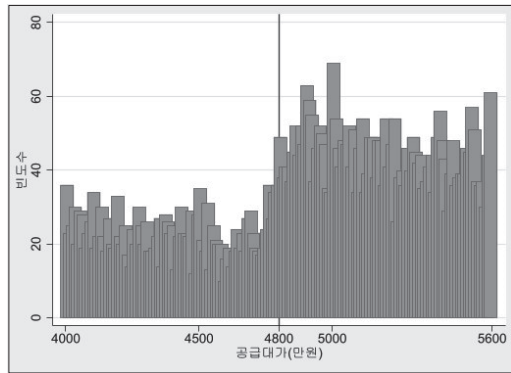
(c) 숙박업



(d) 운수·창고·통신업



(e) 대리·중개·도급업



(f) 서비스업

자료: 저자 작성

■ 저자약력

정다운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수료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부연구위원)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관한 연구

2021년 4월 26일 인쇄

2021년 4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주)프리비

I S B N 979-11-6655-062-1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